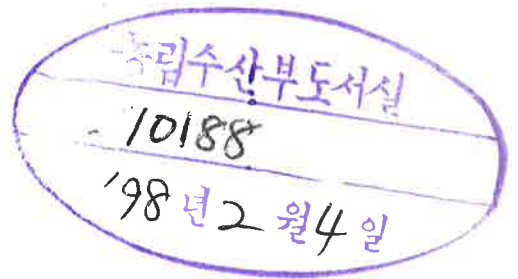


행정간행물등록번호
31000-51110-58-9537

世界貿易機構協定の 이행에 대응한
'95년도 農林水産業 構造調整事業 시행내용 보고서

1995. 11.



大韓民國政府

本 報告書는 世界貿易機構協定의履行에관한特別法 第13條의 規定
에 依하여 '95年度 農林水産業 構造調整事業 施行內容을 國會에 報
告하기 爲하여 作成하였다.

目 次

I. WTO 출범에 따른 農政의 基本方向	5
1. WTO 출범과 農政與件	5
2. WTO에 대응한 農政의 目標	7
3. 農林水産業 構造調整事業의 基本方向	8
II. 主要 農政制度의 改革	12
1. 目標 및 方向	12
2. 農地制度 改革	13
3. 糧政制度 改革	17
4. 農水産物 市場·流通制度의 改革	19
5. 協同組合의 改革	23
6. 農林水産事業 推進體系 개편과 審査·評價機能의 강화	28
7. 農林水産 政策資金 貸出制度의 개선	29
8. 농어촌 構造調整을 위한 法令 정비	32
III. 行政規制緩和와 負擔輕減 對策	38
1. 目標 및 方向	38
2. 農業人등의 不便事項 解消	38
3. 行政規制 緩和	41
4. 農漁業人 負擔輕減 對策	45

IV. 農林水産業 競爭力 強化를 위한 構造改善 對策	48
1. 目標 및 方向	48
2. 農漁業 專門人力的 育成	49
3. 生産基盤의 整備	52
4. 技術革新 및 施設現代化	57
5. 農林漁業의 1, 2, 3차 複合産業化	59
6. 농림수산물 輸出振興 및 輸入管理對策	61
V. 品目別 競爭力 強化 對策	67
1. 目標 및 方向	67
2. 쌀 産業	67
3. 園藝産業	70
4. 畜産業	74
5. 水産業	80
6. 林 業	85
VI. 農漁村 生活環境 改善 및 福祉增進 對策	89
1. 目標 및 方向	89
2. 다양한 所得源 개발	90
3. 농어촌 基礎 生活與件 개선	91
4. 농어촌 敎育與件的 획기적 개선	93
5. 농어민 年金制 실시	97
6. 농어촌 醫療여건 개선	99

VII. 對策推進을 위한 財源確保 및 投資計劃	102
1. 目標 및 方向	102
2. 42조 投·融資 計劃	103
3. 15조 農特稅 投資計劃	106
〈부록 1〉 '95예산현황	113
〈부록 2〉 농림수산사업 세부추진요령	117
〈부록 3〉 농어촌발전대책추진일지	121

I. WTO 출범에 따른 農政의 基本方向

1. WTO출범과 農政與件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온국민의 노력으로 놀랄만한 經濟發展을 이룩하여 왔으며, 그간 農林水産業도 국민의 食糧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농어업인의 주요 所得基盤이 되었을 뿐 아니라, 農漁村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있어서 基本産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農林水産業은 쌀 중심의 영세한 營農規模와 농지기 반정비의 미흡, 젊고 우수한 人力의 타산업으로의 진출 등에 의한 高齡化·婦女化된 인력구조, 도로, 통신, 교육, 의료 등 生活 및 복지여건에 있어서도 都市에 비하여 낙후되는 등 여러면에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世界 經濟秩序속에서도 주요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올해의 수출이 1,000억불을 초과하는 등 國際貿易은 우리 경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이에따라 세계 각국이 새로운 貿易秩序를 형성하기 위해 시도된 UR協商 과정에서 정부는 국가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94년 WTO協定履行을 批准하여 '95. 1. 1부터 發效되게 되었다.

世界貿易機構(WTO)의 출범으로 쌀을 제외한 주요 農林水産物이 關稅化를 조건으로 輸入自由化되거나 될 예정이며 국내 補助金 減縮 합의에 따라 종래 증산위주의 價格政策을 지속하기는 곤란하게 되었으나 외국의 輸入障壁도 낮아져 우리 농수산물의 輸出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世界農業은 勞動節約·技術集約的인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분야별로 專門化되

고 있고, 情報通信과 저장·수송 기술의 발전은 國際競爭을 더욱 심화시키며, 아울러 농업과 연관산업의 複合産業化가 촉진되고 있다.

한편, WTO 체제하에서는 가격지지, 보조금 등의 정부보조를 통하여 농업을 계속 보호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經營革新과 競爭力 확보만이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95년 6월에 실시된 地方自治團體長 選舉를 계기로 본격적인 地方自治制가 시행되면서 中央集權的 업무체제가 地方分權的 體制로 전환되고 意思決定에 있어서도 地域住民의 意思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中央政府는 地方政府와 農業人 등의 自律的인 意思決定을 존중하고 지역간 경쟁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調整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國內外的 與件變化속에서 UR타결을 앞두고 나타난 農林水産業의 주요 問題點과 해결해야 할 課題들로서는 첫째, 農政의 變換期에 많은 농어업인들이 농림어업의 미래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政府가 신뢰성 있고 확실한 農漁村 對策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농업에 대한 희망과 자신을 갖도록 하는 일이었다.

둘째, WTO 출범에 따라 국제 市場의 無限競爭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취약한 현재의 농림어업의 構造를 극복하고 시급히 농림어업의 競爭力을 제고시켜 나아가야 하는 일이었다.

셋째는 농림어업을 이끌어 나갈 「프로」정신을 가진 젊고 유능한 專門人力양성이 핵심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넷째는 농어촌의 道路, 住宅 등의 生活與件이 도시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열악하고 教育·醫療등 福祉水準도 미흡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收買備蓄 등 國內補助 정책이 제한받게 됨에 따라 價格安定制度의 정비가 필요해 졌으며, 농업인들의 쌀 생산의욕 저하와 쌀 栽培面積의 감소등으로 쌀 자급기반의 약화가능성에 따라 보다 장기적인 食糧自給基盤 確保問題의 대처도 필요하다. 아울러 21세기를 앞두고 전개될 情報·技術化 時代, 統一時代, 環境 및 人間중심의 시대등에 대응한 長期的인 농림수산업 發展方案등의 수립도 필요하다 하겠다.

2. WTO에 대응한 農政의 目標

WTO체제하에서 농림어업이 전국민의 기본적인 食糧을 안정적으로 공급 함은 물론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며, 농 어업인들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지고 농림어업에 종사하면서 도시민 못지 않는 소득과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아울러 농림어업의 環境保護와 地域 均衡發展에 대한 기능도 신장시켜 나가는 것이 農政의 基本目標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림수산업을 高度産業社會의 다양한 업종중에서도 젊고 유능한 人材가 자신있게 선택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경제적으로도 수지 맞는 업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農林漁業이 競爭力을 갖추고 경제적인 收益뿐만 아니라 농업종사에 따른 職業 및 生活環境이나 농업에 대한 社會認識·發展可能性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될때 농림수산업은 장기적으로는 構造改善과 專門化를 통하여 자생력을 갖추고 기본적인 최소한의 國民食糧과 高所得時代의 需要와 기호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질 높은 食料品 需要를 충족할 수 있는 몇몇한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둘째, 농림어업인을 능력있고 企業家 精神이 투철한 專門經營人으로 육

성하여야 한다. 無限競爭時代에 농림어업 經營體를 專門的인 지식과 經營能力을 갖추고 운영·육성함으로써 스스로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응해 나가면서 농림어업을 수지맞는 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새로운 농어촌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될때 農林漁業人은 農林漁業을 희망있고 수지맞는 산업으로 가꾸어 갈 수 있으며 소득과 생활수준도 타산업 종사자 못지않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當당한 社會人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농어촌을 농림어업의 안정적인 生産空間으로 뿐만 아니라 都·農의 공간적 개념을 초월한 다양한 産業 및 住民의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농어촌은 耕地整理가 완료되고 用水·農業도로등이 잘 갖추어져 효율적으로 농림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農林漁業 生産空間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농림어업 관련 2, 3차 산업과 연구소, 그리고 공해없는 농어촌 환경에 적합한 정밀산업등이 발전할 수 있는 複合的 生産空間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道路, 住宅, 生活用水 등 基礎的 生活與件을 갖추고 教育, 醫療, 年金 등 적절한 福祉惠澤도 보장받으면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生活空間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3. 農林水産業 構造調整事業의 基本方向

가. WTO에 대응할 수 있는 綜合的인 農政의 基本的인 틀을 마련

WTO출범에 따른 對內外的 與件變化에 대응하고 농림수산업의 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술한 농정의 기본목표하에서 WTO協定 發效以前에 철저히 준비한다는 자세로 '94년도부터 구체적인 對策樹立에 착수하였다. 우선 既存의 農漁村發展對策을 전면 再檢討하여 WTO등 새로운

여건을 고려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農漁村發展對策 및 農政改革推進方案』을 '94. 6. 14에 확정하였다.

'95년부터는 분야별로 細部實踐計劃을 수립하여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매 분기별로 그 이행實績을 점검해 나가는 한편 매년 2회 「農政改革推進會議」를 개최하여 범 정부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나. 주요 農政制度를 과감히 개혁

農漁村發展對策에 따라 농림수산업의 기본이 되는 農地, 糧政, 協同組合, 市場·流通 등 4대 農政制度를 농림어업의 競爭力 강화와 농어업인 便宜 위주로 과감하게 개혁하여 제도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농정제도개편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실시방식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자율적인 농업인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上向式·自律적으로 개편·실시하는 「農林水産事業 統合實施要領」을 제정하여 운용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고 농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한 각종 行政規制를 완화하고 政府組織을 개편하는 등 농정제도를 조정·정비하였다.

다. 構造調整을 통한 競爭力 강화에 주력

농정의 基本方向은 국제화·개방화에 대응한 전문화, 고품질화, 비용절감등 綜合的 農業競爭力을 強化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이를 결정짓는 人力構造의 개선, 농지등 生産基盤의 정비, 技術革新등 전반적인 농업의 構造調整에 역점을 두고 있다.

WTO체제하에서의 競爭力은 유능한 專門人力등 人的資本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아래 技術과 經營을 한발짝 앞서서 혁신해 나가는 先導的인 專門農漁業人力에 대해 집중지원하여 우리 농어업의 중추세력으로 육성시켜나

가고 농어촌 現場隘路 技術과 尖端農業의 實用化에 중점을 둔 技術革新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構造改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農地制度를 개편하고, 農業振興地域을 중심으로 耕地整理, 排水改善, 用水開發등 農業生産基盤을 조기에 완비할 계획이며, 농수산물 流通改善을 위하여 品目別 專門生産者 組織을 육성하고 產地流通施設을 우선 지원하는 등 농업인 등의 流通 및 加工産業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流通經路의 다양화하여 농업인 등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농수산물 輸出入對策으로서 우리 농수산물의 海外市場 開拓活動 강화, 貿易情報의 수집·분석·전파 체계 마련등 競爭力있는 品目の 輸出을 적극 확대하면서, 輸入動向의 면밀한 점검과 대응, 特別緊急關稅·調整關稅 등을 통한 低價 農産物 輸入增加에 대비한 관리대책강구, 原產地 表示制 강화 등 輸入開放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效率的인 輸入管理對策을 추진하고 있다.

라. 농어촌의 生活與件과 농어업인등의 福祉水準을 획기적으로 개선

競爭力 강화대책을 통한 農家所得을 확보하는 것과 아울러 농어촌의 基礎生活與件을 갖추고 농업인등의 복지제도를 개선하여 종합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

政府는 '94년부터 農漁村特別稅를 재원으로 하여 각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는 農漁村·農漁民 관련 시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농어촌의 주택을 개량하고 도로를 확·포장하며, 상하수도와 오염 소하천등을 정비하여 농어촌을 쾌적한 生活空間으로 조성해 나가는 한편, 농공단지 조성을 통하여 고용기회를 늘리고 특산단지, 휴양단지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所得源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이와 아울러 '95년 7월부터는 정부 일부補助에 의한 農漁民 年金制度를 전면 실시하고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는 대학입학 특례제도를 마련하는 한

편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마. 대책 추진을 뒷받침할 財源 확보

기존의 많은 대책들이 施行過程에서 재원마련의 한계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였던 적도 있었으나, 금번 농어촌대책에는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까지도 확보함으로써 차질없이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2001년까지 投·融資토록 되어있던 構造改善 42조 投融資計劃을 3년 앞당겨 '98년까지 집중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성금 성격의 농어촌특별세를 '95년부터 10년간 15조원을 조성하여 農漁村分野에 집행토록 하였다.

〈42兆원 投融資計劃〉

	'92~'94	'95	'92~'98
－ 경쟁력 강화	9조 4,614억원	4조 2,664억원	31조 8,947억원
－ 농어촌활력증대	8,874	4,962	3조 5,030
계	10조 3,488억원	4조 7,626억원	35조 3,977억원

〈農漁村特別稅 投融資計劃〉

	'94	'95	'94~2004
－ 농어업경쟁력강화	1,670억원	9,273억원	9조 775억원
－ 농어촌생활환경개선	1,450	4,225	4조 1,040
－ 농어업인복지증진	360	1,934	1조 8,185억원
계	3,480억원	1조 5,432억원	15조원

II. 主要 農政制度의 改革

1. 目標 및 方向

우리 農漁業·農漁村의 發展潛在力을 최대한 발현시켜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施策과 制度, 政策擔當者의 시각, 政策推進방식등 農政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改革的 接近이 필요하다. 農林漁業의 競爭力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政府의 對策이나 財源의 뒷받침을 통하여 농림어업의 基本的인 構造調整을 해야하며, 이의 주요 手段인 農地制度, 食糧管理 制度, 農·水·畜·林業 協同組合, 農林水產物 市場·流通制度 등을 새로운 여건에 맞게 改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농어업의 競爭力을 약화시키고 地方化·自律農政時代에 맞지 않는 각종 規制와 障壁을 허물어야 한다. 落後된 生産基盤을 최단시간내에 機械化·自動化 營農이 가능하도록 하고, 專門 生産者組織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여건에 맞는 형태의 組織이 용이하게 設立되고 運營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청된다. 또한 農漁業人, 生産者組織, 農漁業 關聯組織이 市場變化에 적절히 대응하고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시장·유통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政府는 이러한 農政制度의 전면적인 改革을 위하여 農地, 糧政, 協同組合, 市場·流通制度등 基本 4大 制度改革을 실시하고 현재 세부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개혁이 制度化되고 內實化 될 수 있도록 점진해 나가는 한편 自律的인 農政執行方式인 統合實施要領을 제정하여 실시중에 있으며 농림수산 관련 政策資金 貸出制度도 개선하였다.

2. 農地制度 改革

가. 50년만에 종합적인 農地制度 완비

'49년 農地改革法 제정 이후 영세·생계농 보호위주로 운용되어온 農地制度를 개편하여 다양한 농업경영체의 육성을 지원하고 농지의 소유·거래 및 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構造改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에게 不便을 주는 각종 農地 關聯 法律을 統廢合, 광복이후 처음으로 농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을 '94. 12 제정하고, '96. 1. 1 시행 예정으로 현재 下位法令을 制定하고 있다.

나. 農地所有原則을 定立하고 거래활성화

종전에는 農地所有原則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늘어나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막을 길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소유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農地法 第6條), 농사짓지 않는 사람이 農地를 가질 경우 처분하도록 하였고 처분하지 않을 경우는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履行 強制金을 부과하도록 하였다(同法 第10 및 第11條, 65條).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公共事業을 하는 경우, 교육기관·농업기자재 생산자 등이 시험·실습용으로 농지를 가지는 경우, 농업외 용도로 전용이 확정된 경우, 도시민이 주말농장·텃밭 등의 용도로 개발된 한계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은 비록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유상한을 완화하여 農業進興地域안에서는 소유상한을 완전히 철폐하여 영농능력이 있으면 무제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규모확대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투기 가능성이 있고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지 않은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3ha 소유상한을 유지하되 재배

작목, 경영능력, 농지의 집단화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5ha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同法 第6條 및 7條) 그동안 농지 거래를 제한해온 농지소재지 6개월 사전 거주요건과 20km 통작거리제한을 폐지하여 농지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건전한 자본과 경영능력이 있는 자의 영농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賃貸借와 委託經營의 명확화

원래 임대차는 과거 소작제도로 부터 내려온 것이며 이는 耕者有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체농지의 41.2%에 해당하는 농지에 賃貸借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 農地賃貸借管理法을 制定하여 賃貸借를 양성화해 준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賃貸借가 아무런 制限없이 가능하나 실제로 농지를 임대하는 사람은 土地使用料만 받을 뿐 농업경영이나 최종생산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農業을 經營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전부위탁도 임대차와 그 기능이 유사하므로 임대차와 전부위탁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된다.(同法 第16條 및 22條)

라. 農業振興地域內的 우량농지 보전

農業振興地域制度는 '90년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하여 도입되었으며 '92년에 1,008천ha가 指定되었고 그 후 再整備 및 追加指定을 통해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은 1,034천ha이다. 농업진흥지역제도를 도입한 기본취지는 종전의 필지별 보전방식인 絶對農地, 相對農地制度로는 優良農地를 보전하는데 한계가 있어 圏域別 保全方式으로 개편한 것이며,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生産基盤 投資를 집중하여 '98년까지 耕地整理를 완전히 끝내고 2004년까지 200천ha를 대구획으로 정리할 계획이며, 추곡수매, 농지매매자금지원, 산지유통시설설치 등 각종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 農地利用 增進事業의 시행

지금까지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하여 農地賣買, 農地交換·分合 및 農地 長期貸借事業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농지 매매·교환·분합·임대차 뿐만 아니라 농지의 共同利用을 통해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農業經營體 育成事業까지 포함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한다.(同法 第14條) 사업은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등이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고 市·郡 農漁村發展審議會의 심의를 거쳐 사업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고시하고 소유권 이전, 임차권 설정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시행한다.(同法 第16條)

바. 農業振興地域밖 농지의 규제 완화

지금까지 농촌의 산업은 農業이 거의 전부였고 2차산업, 3차산업은 거의 없었으나 앞으로 농어촌에서도 2·3차 산업을 유치하여 農外所得을 늘려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을 다양한 산업공간으로 유도해 나감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農漁村이 과밀집중된 도시인구를 일부 흡수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제도적으로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중 농사지를 조건이 별로 좋지 못한 지역을 주대상으로 農漁村産業地區로 지정하고 농어촌산업지구내에서는 전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허가대신 申告로 가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규모, 이용할 수 있는 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同法 第37條) 그리고 전원생활을 그리워하는 도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限界農地를 개발하여 주말농원, 텃밭 등으로 분양하는 限界農地開發事業을 시행한다.(農漁村整備法 第77條)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업인, 농업법인이 소유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계농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된 농지는 농업인 아닌 사람도 소유할 수 있으며, 주말농원, 휴양농원으로 많은 농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소유상한은 1,500m²로 제한하였다.(農地法 第6條)

새로운 農地制度의 主要內容

구 분	주 요 내 용
○ 농지의 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농업인, 농업법인이 소유할 수 있음 ○ 20km 통작거리 및 농지소재지 사전거주 등의 제한은 폐지하여 실제 농사를 지을 경우 거리에 관계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소유상한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지역밖은 현재와 같이 3ha ○ 농지소유자격이 없는 사람이 농지를 가지거나,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소유상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무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의무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이행강제금 (공시지가의 20%)매년 반복 부과
○ 농지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작업의 일부 위탁 허용 ○ 농지구묘화, 집단화 및 농업경영체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 농지의 보전 및 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농지보전 방식인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운용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최대한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하여는 이용규제 완화 ○ 농지의 타용도 사용시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 ○ 농지전용절차 간소화 ○ 농어촌산업지구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에 2, 3차산업을 유치하여 농외소득을 늘리고 농어촌 활성화 도모 - 산업지구내에서는 전용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전용가능

3. 糧政制度 改革

가. 새로운 糧政與件에 대응

지난 20여년간 政府收買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糧穀政策은 시대여건의 변화에 따라 생산자인 농업인이나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못하면서 정부의 과중한 財政負擔을 초래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특히, 쌀이 갖는 정치·경제·사회적 의미 때문에 양곡관리 정책이 당시의 정치·경제여건에 따라 추진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 일관성이 결여되어 최근 양정여건에 맞는 양곡정책 방향설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93. 8. 20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한계상황에 달한 양곡관리기금 운영을 정상화 할 수 있는 糧政制度 전반에 걸친 改革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 양곡관리법 개정 : '94. 1. 5, 12. 31
- 시행령 개정 : '94. 4. 30, 12. 31
- 시행규칙 개정 : '94. 5. 25, 12.3 1

나. 民間流通活性化의 여건조성

쌀값 계절진폭의 허용으로 민간유통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農協을 통해 收買穀의 공매시기,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95년 8월에는 단경기 쌀값이 전년도 수확기대비 11.2%까지 상승하는 산지 쌀값지지 효과를 가져왔고, 農協收買에 대한 『差額支給制』를 '93년산 수매부터 시작하여 일정물량에 대해 수매가와 산지미가와의 差額을 정부에서 補填해 주고 있으며(糧穀管理法 第16條第4項), '93년부터 米穀綜合處理場에 대해 수확기 원료벼 買入資金을 융자하여('95 : 860억원) 민간의 벼 매입능력을 높임으로써 산지쌀값을 지지하도록 하였다.

다. 정부미 방출방식의 전환

농협 差額收買 物量과 정부 收買物量중 일부를 農協에 인도하여 농협이 쌀값 계절진폭 범위내에서 自律的으로 公賣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개입을 축소하였다.('95공매실적 : 9,414천석)

라. 良質米 流通體系 확립

물벼의 수확·저장등이 유리한 지역에 米穀綜合處理場 설치를 확대하여 산지 쌀 유통의 핵심체로 육성해 나가고, 품질인증등을 통한 양질미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고품질 생산지역을 대상으로 品質認證制를 확대하는 등 얼굴있는 쌀 공급을 확대하고, 양질미 생산을 위한 品種別 區分收買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95. 1. 1 부터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하여 쌀의 產地表示를 義務化 하였다.(농림수산부고시 제1994-28호 : 양곡매매업자 및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명령)

마. 糧政與件 변화에 따른 制度 整備

양곡류 유통 및 수입제도 정비를 위하여 糧穀管理法令등을 개정하여 收買豫示制 및 差額支給 收買制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양곡가공업, 매매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민간유통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및 糧穀買入資金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양곡소매상의 정부미 상시보유, 의무매입지역 제한, 곡가조절용 정부양곡 반출지역 제한과 양곡매매업 허가지역등을 폐지하였으며, 쌀을 제외한 양곡류의 輸入制限 조치를 철폐하였다.

아울러 양곡사업의 財政運營 健全化를 위해 糧穀管理基金을 廢止하고 '94년부터 양곡관리사업은 양곡관리특별회계로 운영하여 부족자금 전액을 財政에서 지원토록 하는 등 糧穀事業의 會計制度도 정비하였다.

4. 農水產物 市場·流通制度의 改革

가. 새로운 유통환경에 부응하는 市場·流通의 혁신

'94. 5. 1부터 農水產物流通및價格安定에關한法律이 시행됨에 따라 도매 시장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농안법파동」이란 문제가 초래되어 이를 계기로 都賣市場의 制度改革은 물론 산지와 소비지를 망라한 農水產物流通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 마련이 불가피하여 '94. 5. 農林水產部, 서울시 가락시장관리공사, 농·수·축·임협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農水產物流通改革企劃團』을 발족하여 도매시장 운영제도 개선, 생산자단체 유통기능 강화, 유통정보체계 개선등 종합적인 농수산물유통개혁방안 마련에 착수하였고 생산자대표, 유통업계대표, 소비자단체대표, 학계, 언론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農水產物流通發展委員會』를 발족하여 유통개혁기획단이 제안한 개혁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農水產物流通改革對策을 수립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94. 11. 1 개정된 農安法이 공포 및 시행되었고, 2004년까지 약 9조 7천억원을 투자하는 획기적인 농수산물유통개혁대책에 대한 細部實踐 計劃을 마련하여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시행령개정 : '95. 1. 28

- 시행규칙개정 : '95. 3. 8, 6. 30

나. 農業人, 生産者團體등의 產地 流通 활성화

농수산물유통은 產地에서부터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산지에서 농업인등을 品目別로 組織化하고, 생산, 출하, 가공, 판매사업의 많은 부분을 생산자조직이 맡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유통상 부가가치를 농업인들에게 환원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主產地 중심으로 품목

별 基礎組織을 우선 육성하고, 장기적으로 규모가 큰 廣域組織을 육성해 나가며, 품목별로 조직원, 협동조합, 행정·지도공무원의 合同教育 실시로 共同體意識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였다.

아울러 品目別 生産者組織의 결성이 용이하도록 營農組合法人の 지역제한 폐지 등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品目과 組織을 구분하여 필요한 유통시설과 자금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市場對應能力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同法 第6條)

또한 농수산물에 대하여 산지에서 선별, 규격포장, 예냉, 저장, 저온수송, 가공, 판매등 일련의 종합처리로 附加價値를 높이고 이를 농업인들의 소득으로 전환시키고자 농산물포장센타(160개소)와 마을단위 간이집하장(4,000개소) 및 주산지 중심으로 산지가공공장(2,000개소) 등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였다.

다. 公營都賣市場의 공정거래 기능 강화

都賣市場 관리운영에 관하여 여러가지 논의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이 시장을 운영하고 관리는 정부기관인 사업소나 그 대행기관인 市場管理公社가 하는 것으로 하되 都賣市場 開設者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리공사,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등에 의한 『公共出資法人』이 도매시장의 관리나 운영을 일원화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도록 하였다.(同法 第12條)

가락시장의 경우 生産者團體의 代表가 관리공사의 자문위원으로 시장관리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며,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評價制 강화로 公正去來活動을 강화토록 하였다.

서울가락시장은 상장물량증가, 경락가격의 상승으로 지정 도매법인의 上場手數料를 引下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우수출하주의 규격출하품은 6%에서 4.5%로 1.5%P 인하하고 비규격출하품은 6%에서 5%로 1%P 인하하여 생산자의 부담을 대폭완화하였으며, 地方公營都賣市場은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인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仲都賣人の 『산지수집, 도매, 중개, 소매』에 걸친 광범위한 영업영역을 분할하여, 산지활동은 생산자단체와 도매시장법인이 맡고 仲都賣人は 상장된 농수산물을 거래하되 『都賣』를 원칙으로 하고 『仲介』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개설자가 仲都賣人の 許可시 일정기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한편 중도매인의 圃田賣買, 受託賣買 行爲는 禁止하되 출하량이 극히 적은 품목 등 원천적으로 상장매매가 어려운 품목은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비상장 거래토록 제도화하였다.(同法 第28條 및 施行規則 第19條)

특히 가락시장에서는 농산물에 대해 중도매인의 圃田賣買와 受託賣買 행위를 금지하고 도매시장에 입하되는 전품목의 上場去來를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현재 개장운영중인 公營都賣市場은 12개소이나 이외에 22개시장을 당초 2001년에서 '98년까지 앞당겨 건설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하고, 신설되는 公營都賣市場에 지역내 유사 도매시장을 흡수토록 할 계획이다.

라. 消費地 流通經路 多元化로 유통비용 절감

都賣市場 이외의 유통시설을 확보하여 소비자유통의 다원화를 위해 생산자단체로부터 농수산물을 수집 유통가공, 소포장하여 직영점, 가맹점

등에 필요한 물건을 배송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 도시교통체증완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결을 도모하는 물류센타건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95년도에는 서울 창동, 양재동과 부산, 청주등 4개소에 물류센타를 건설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대도시 외곽에 16개소를 건설하여 產地農業人등과 도시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므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토록 할 것이다.(同法 第57條의4)

農協中央會는 기존의 경직된 농협운영 테두리를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업적인 경영방식을 도입한 流通子會社를 '95년중에 설립하였다.(同法 第57條의5)

농·축·임협 등 생산자단체는 산지유통에 주력하고, 소비지 小賣流通은 流通子會社가 전담토록 하여 물류센타, 농·수·축협의 직판장, 민간유통업체 소매체인망 등과 연계시켜 전국권 유통망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直去來를 촉진하고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消費地의 국·공유 유희지등에 농업인들의 장터를 개설 운영하고 대도시의 洞과 지역조합의 자매결연을 촉진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단체 및 대량수요처와 생산자단체와의 횡적연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 13개 시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협의 宅配制度를 전국일원으로 확대해 나가고, 품목도 쌀·김치 이외의 地域特產品을 추가하여 실시해 나가는 동시에 郵便注文販賣制度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국도, 고속도로변의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의 직판장 운영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5. 協同組合의 改革

가. 農漁業人의 실질적인 이익보호 단체로 개편

'90년대 이후 급속히 변화하는 民主化·自律化·地方化·世界化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농업인들의 조합경영 참여욕구가 증대되었고, 시장·유통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됨에 따라 協同組合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WTO 체제의 출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國際競爭力 강화를 위하여는 생산자단체인 농·수·축·임협 등 협동조합의 역할 증진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수립된 新經濟5個年計劃에 協同組合의 改編方案을 포함시켰으며 '94년 2월에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발족한 農漁村發展委員會에서 건의한 협동조합개혁방안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協同組合 경영에 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組合이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利益保護 團體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고,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등 經濟事業을 강화하고 企業經營 體制를 도입하여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協同組合 關聯 法律을 改正하였다.

- 농·수·축·임협법 개정 : '94. 12. 22
- 농·수·축·임협법시행령 개정 : '95. 6. 22
- 농·수·축협법시행규칙 개정 : '95. 6. 23

나. 협동조합의 民主化·自律化 및 경영의 전문화를 도모

1가구 1인에서 2인까지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複數組合員制를 도입하였으며(農協法 第22條, 121條) 조합의 해산·합병·분할과 조합장 선

출방식에 관한 정관변경 등 조합운영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全 組合員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도록 組合員 投票制를 도입하여 민주화·자율화를 보장하였다.

組合의 合併·규모화에 대비해 이사수를 6~10인에서 6~14인으로 늘렸으며,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를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조합의 여건에 따라 組合長 選出 方式을 直選制 또는 間選制中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中央會長의 피선거격을 조합원으로 제한하고(同法 第149條) 中央會理事會에 조합장 이사수의 구성비율을 1/2에서 2/3로 확대하여 조합원에 의하여 조합과 중앙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 조합원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개선하였다.

다. 地域組合의 權限 강화 및 中央會의 業務 재조정

중앙회와 조합간의 역할 조정을 위하여 개선한 사항으로는 중앙회의 조합 監督機能을 조정하여 조합에 대한 監査는 업무와 회계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였고(同法 第166條), 組合長이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할 수 있던 組合 幹部職員의 임면을 조합장이 理事會의 협의를 거쳐 임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共同事業開發 등을 위해 협의회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中央會에만 예치할 수 있던 조합의 여유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및 國채·공채 등의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조합의 自律性을 제고하였다.

라. 流通·加工 등 경제사업의 활성화

보호예수 업무, 위탁영농사업 등 조합의 사업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準組合員의 범위확대, 非組合員의 사업이용범위 확대, 전문조합의 설립제한

폐지, 신설되는 專門組合에 대한 신용사업의 불인정, 전문조합연합회 설립 제도 신설(同法 第126條) 등을 통하여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사업 손실보전자금·조합상호지원자금 등 조합원 및 조합에 대한 지원자금운영근거 등을 新設·改善하였다.

마. 組合員의 權益保護 強化

협동조합이 일체의 政治活動을 할 수 없도록 하였던 것을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政策支持 등은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고,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을 무한책임인 보증책임에서 有限責任인 出資額 限度로 조정하였다.(同法 第26條)

또, 代議員會에서의 대리권행사를 제한하였으며, 組合長의 임후보 결격사유를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하였고, 일체 금지되었던 任員의 선거운동도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전벽보의 첩부, 선거공보, 소형인쇄물의 배부, 합동연설회 등을 개최할 수 있게 하였다.

바. 獨立事業部制의 실시로 경제사업 활성화

中央會의 信用事業과 경제사업의 專門化를 위하여 信用·經濟事業을 각각 분리하여 인사·회계·예산·조직 등이 엄격히 분리 운영되도록 獨立事業部制를 실시하고(同法 第153條第7項), 專門經營人에 의한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副會長을 전문경영인으로 하였으며, 전문경영인에게는 인사·회계 등의 중요사항을 위임·전결 처리토록 法制化함과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독립사업부제의 評價·檢證을 통해 신용·경제사업의 효율화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協同組合發展企劃團』 설치·운영근거(운영기간 : '95. 6. 23~'97. 6. 30)를 마련하였다.(同法 附則第9條)

〈농협법 주요개정 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p>1. 조합의 민주화·자율화 및 경영의 전문화의 조화를 도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회이사회 구성 (제148조2의 제3항) ○ 중앙회장 자격 (제149조 제1항) ○ 복수조합원제 도입 (제22조, 제121조) ○ 조합장 중앙회장의 권한 조정(제47조 제1항, 제127조, 제148조, 제3항, 제4항) ○ 일선조합의 전문경영인제 도입(제46조,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조합장 구성비율 : 1/2 ○ 조합원, 비조합원 불문 ○ 조합원 가입은 1가구 1인에 한함 ○ 조합장 : 대표권, 업무 집행권 보유 ○ 중앙회장 : 대표권, 업무통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조합장 구성비율 : 2/3이상 ○ 조합원으로 제한 ○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가구 2인까지 가입 허용 ○ 조합장 : 대표권, 업무 총괄권, 업무집행권 - 단,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은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 ○ 중앙회장 : 대표권, 업무총괄권 - 부회장에게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각 담당업무를 위임·전결처리하게 함. ○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제 도입
<p>2. 중앙회와 일선조합의 기능역할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회의 조합검사범위(제166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제한 없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의 업무 및 회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데 필요한 범위로 제한

구 분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 촉진을 위한 제도 보강(제74조의 2, 제127조) <p>3. 경제사업의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조합의 1구역 1조합 원칙 폐지(제119조) ○ 전문조합연합회 설립 허용(제126조) <p>4. 중앙회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전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회의 경제사업 활성화(제153조 제6항, 제7항, 제148조 제1항) ○ 기획단 설치·운영(부칙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구역내에는 동일업종의 전문조합을 2이상 설립 불가 ○ 연합회 설립에 관한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제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중앙회의 합병 촉진 자금지원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구역내에 동일업종 전문조합 2이상 설립 허용 ○ 법인 또는 비법인형태의 전문조합연합회 설립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사업부제 실시 ○ 전담 부회장의 운용 ○ 사업손실보전기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사업부제 실시결과를 평가·검증하고 독립사업부제 유지·보완 또는 신용사업의 분리·통합 및 별도법인 설립등 신용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 설치

6. 農林水産事業 推進體系 改편과 審査·評價 機能의 강화

가. 農林水産事業 統合實施要領 制定

(1) 농림수산 사업을 上向式으로 개편

지금까지는 각종 농림수산사업이 中央에서 결정해 지시하는 下向式으로 지역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고 農漁業人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하였으나, WTO 체제 출범과 본격적인 地方自治制의 실시등 변화된 농정여건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創意와 自助努力을 필요로 함에 따라 農政執行을 上向式 추진방식으로 전환하고 豫算編成方式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농림수산사업을 統合實施要領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2) 농림수산사업의 綜合的인 안내서 역할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수산청의 모든 사업을 종합한 案內冊子를 읍·면 및 시·군 민원실, 농촌지도소 경영상담실, 농·수·축·임협등 안내기관에 비치하여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案內機關을 지정하여 農漁業人이 농림수산사업의 選擇에서부터 事業計劃의 수립, 事業의 推進課程에 관한 사항을 안내·상담·지도하고 있다.

(3) 農漁業人의 直接 事業申請등 참여 확대

농어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의 內容, 申請資格, 支援規模, 支援條件, 支援節次등을 종합제시하여 농어업인이 연중 事業을 구상하고 市·郡을 통해 申請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新規事業은 종합적인 事前調査를 실시하고, 농림수산부 사업지침 심의위원회(위원장 : 농림수산부차관)의 심의를 거쳐서 착수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다.

(4) 事業施行過程의 公正性과 透明性 확보

사업계획 및 사업신청요령의 공지로 農業人들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농림수산부문 모든 事業에 대해 사업시행의 전과정을 公開하여 행정의 透明性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事業對象者 選定은 市·郡 農漁村發展 審議會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審査하여 누가, 어떤사업을 어떤과정을 거쳐 얼마의 지원을 받는지 公開하도록 하였다.

(5) 經營帳簿의 기록·유지로 경영능력 배양

농업인 등은 당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 사업에 대한 『경영장부』를 記錄·備置토록 하여 사업운영의 客觀性을 높이도록 하였고 향후 사업의 성과등을 분석할 수 있게 하여 경영능력을 배양하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6) 事業의 點檢·評價 강화

지금까지 다소 미흡하였던 點檢·評價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農林水產事業評價實施要領」을 제정하여 30개 사업을 대상으로 농어업인, 생산자 조직, 시·군, 시·도에서 연간 1회이상 評價토록 하였으며, 시·군, 시·도, 중앙의 合同評價班을 운영하고 이러한 점검·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년도 豫算·基金의 우선支援, 支援縮小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므로써 예산 지원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 세부추진요령 : 부록2 참조

7. 農林水產 政策資金 貸出制度의 개선

가. 農林水產政策資金貸出業務規定 改正

'94. 7월 農林水產政策資金貸出業務規定을 制定하여 政策資金에 대한 貸出基準을 정립하고 政策事業者의 便宜를 도모할 수 있도록 貸出制度를

운영토록 하여 農·水·畜·林協이 자체 與信管理規定보다 우선하여 적용토록 하였다.

政策資金은 다른 자금보다 우선하여 貸出하고, 농림수산업자 信用保證基金은 다른 자금보다 우선하여 政策資金에 보증하여 政策資金에 대한 별도 信用貸出 限度를 책정하였다.

後取擔保貸出은 貸出時에는 信用貸出, 擔保貸出, 信用保證付貸出 및 後取擔保貸出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政策事業者가 貸出을 편리하게 받도록 하고, 擔保物의 鑑定評價 및 대출비율은 專門鑑定機關 또는 타금융기관에 비하여 낮게 평가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政策資金 貸出業務 취급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도록 하였다.

'95. 3월에 동 規定을 改正하여 信用貸出을 확대하여 保證信用貸出은 2,000만원까지, 무보증신용대출은 1,000만원까지, 限度의 별도 信用貸出 對象資金은 농업인등 후계자자금 3,000만원, 農機械購入資金 300만원, 농어민 자녀학자금은 전액 대출토록 하고 不動產 擔保比率은 100%, 船舶 擔保比率은 25%로 上向調整하였으며, 各種 貸出書類 및 節次도 간소화하였다.

나. 農林水產政策資金貸損補填基金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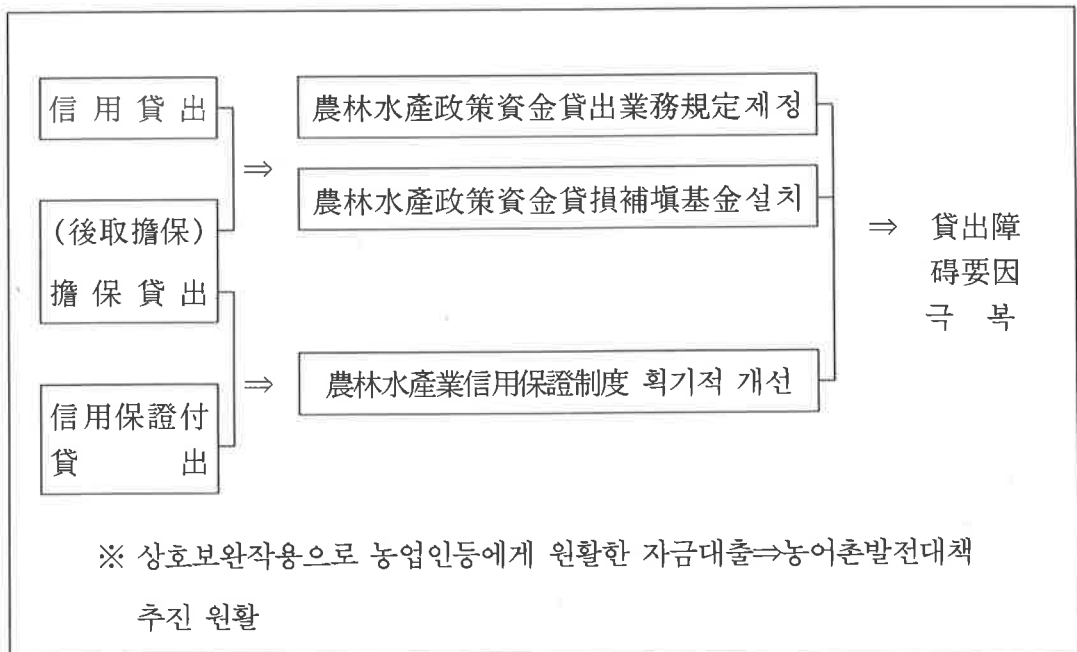
政策資金의 貸出로 인하여 農·水·畜·林協에 부득이한 損失이 발생할 경우 이를 補填함으로써 대출위험이 높은 後取擔保貸出 및 信用貸出의 活性化를 도모하기 위하여 '94. 12월 農·水·畜·林協法 개정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貸損補填基金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農林水產政策資金貸損補填規定』을 제정하였다.

그 財源은 農特會計 取扱手數料중 일부 出捐金으로 하고('95년 200억원 정도) 농·수·축·임협이 대출한 농림수산정책자금중 信用貸出 또는 擔保貸出(後取擔保 포함)한 자금을 貸損補填對象資金으로 하였다.

다. 農林水產業者 信用保證制度 개선

農特稅를 財源으로 하여 10年동안 7,000억원으로 政府出捐金を 확대하고 '94 추경에 200억원과 '95豫算에 80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86年 이후 중단된 農·水·畜·林協의 出捐을 '96년부터 재개할 수 있도록 農信保法을 改正하였다.

또한 信用保證限度를 개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法人·團體는 2억원에서 5억원을 확대하고 保證比率를 引下하는 한편 保證對象者를 生産者위주에서 加工·流通業者도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保證取扱機關을 모든 組合으로 확대하였다.



8. 농어촌 構造調整을 위한 法令 정비

政府는 농림수산업의 構造調整사업의 일환으로 競爭力 提고등 農漁村發展對策을 지원하고 制度化하기 위하여 農地法, 農漁村整備法, 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法을 制定하였고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農水產物流通 및 價格安定에관한法律 등 法律을 改正하였다.

世界貿易機構協定 이행에 따라 농수산물 輸入管理制度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輸入 농수산물의 販賣利益金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糧穀管理法, 畜產法 등을 改正하는 한편, 농어업인의 醫療保險 부담경감 등 生活與件 및 福祉向上을 위하여 醫療保險法, 國民年金法 등의 法律도 改正하였다. 制·改正된 法律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競爭力提高 등 農漁村發展對策 支援法律

法 律 名	主 要 改 正 (制 定) 內 容
1. 農地法(제정)	○ 농지의 소유·거래 및 이용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진흥지역내 농지소유상한 폐지등)
2. 農漁村整備法 (제정)	○ 농업기반 정비사업 개념 확대 ○ 환지제도개선, 농어촌생활환경정비구역 지정 ○ 한계농지 정비 지구의 지정·개발
3. 農漁村特別稅管理 特別會計法(제정)	○ 농어촌특별세의 사용 용도를 분명히 함 (세입, 세출, 회계 등)
4. 農漁村發展特別 措置法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요건 완화 ○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 ○ 농업인, 어업인에 대한 용어 정의

法 律 名	主 要 改 正 (制 定) 內 容
5. 農水産物流通및 價格安定에관한法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도매법인(도매시장법인)에 대한 농림수산부장관승인제 폐지 ○ 중매인 명칭을 중도매인으로 변경하여 도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함.
6. 農漁村構造改善 特別會計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계정과 농어촌특별세 전입금 사업계정을 구분 ○ 농어촌특별세 전입금 사업계정에서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별표에 명시된 농어촌 경쟁력 강화사업을 지원
7. 農 業 協 同 組 合 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조합원제 도입(동일가구내 2인까지 허용) ○ 전문경영인제 도입(사업본부장제, 상임이사제) ○ 전문조합연합회 설립(권역별, 지역별) ○ 전문조합 설립 자유화(1구역 1조합 원칙 폐지) ○ 신용·경제사업 분리 및 중앙회장 권한 조정
8. 水産業協同組合法	상 동
9. 畜産業協同組合法	상 동
10. 林業協同組合法	상 동
11. 農漁村振興公社및 農地管理基金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진흥공사의 사업범위 조정 ○ 농지매매사업 등에 의하여 지원받은 농지에 대한 규제 강화 ○ 농지장기임대차 대상 요건 완화

法 律 名	主 要 改 正 (制 定) 內 容
12. 農業機械化促進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의 범위 조정 ○ 농업기계의 수급·가격에 대한 조정제도 폐지
13. 獸醫師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자에 대한 수의사 면허제한 삭제 ○ 수의사 국가시험을 관계전문기관에 위탁 ○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수의학과 졸업자로 제한
14. 水産物検査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제조가공업체의 검사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보고조항 삭제
15. 砂防事業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방사업 대상범위 확대 ○ 사방사업 시행시 전문기술자 배치의무 신설
16. 請願山林保護職員 配置에관한法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를 도지사등에 이양 ○ 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 권고 조항 신설
17. 山林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이용체계 개편(생산임지, 공익임지) ○ 전용하고자 하는 전 면적에 대해 전용부담금 납입 의무화 ○ 임산물 가공업 등록제 폐지

○ 農水產物 輸入管理 關聯法律

法 律 名	主 要 改 正 (制 定) 內 容
1. 糧穀管理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곡류에 대한 수입허가제는 존치하고 미곡류 이외의 양곡에 대한 수출입허가제 폐지 ○ 저율의 양허관세로 수입되는 양곡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사용량, 재고량 보고, 用途制限, 수입이익금 부과 징수 등)
2. 畜產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축등에 대한 수출입제한 완화(신고제) ○ 저율의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축산물관리방안 신설 ○ 소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 ○ 가축시장에서 의무적으로 거래해야 하는 가축에 관한 규정 삭제
3. 蠶業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뽕나무묘목, 누에씨의 수출입허가제 폐지 ○ 누에씨 생산업, 제사업허가제를 신고제와 등록제로 전환
4. 主要農作物種子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체제출범에 따른 종자수출입제도 개선 ○ 종자판매업에 대한 행정규제완화(허가제→신고제) ○ 종묘업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5. 種苗管理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체제출범에 대비한 종묘수출입제도 개선 ○ 종묘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法 律 名	主 要 改 正 (制 定) 內 容
6. 山林法	○ WTO체제출범에 따른 시장접근 임산물(잣, 밤, 대추)의 수입추천 및 수입이익금 징수근거 마련
7. 農水産物流通및 價格安定에관한法律	○ WTO협정에 따라 저율의 양허세율이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수입추천근거, 수입이익금 부과징수, 사용용도 제한규정 마련
8. 家畜傳染病豫防法	○ 가축전염병 분류 재조정 ○ 검역관련조항 일부 조정 ○ 검역관련 수수료 면제
9. 飼料管理法	○ WTO체제출범에 따른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수입추천제 신설 ○ 사료제조업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료판매업신고제 폐지 ○ 사료판매가격 지정제도 폐지
10. 鳥獸保護및狩獵에 관한法律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수출입시 산림청장 허가)
11. 農藥管理法	○ 농약제조업 및 수입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 其 他

法 律 名	主 要 改 正 (制 定) 內 容
1. 關稅法	○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신설
2. 輸出保險法	○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보험제도 운영
3. 國民年金法	○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4. 醫療保險法	○ 예산범위내에서 조합 및 연합회에 의료보험사업 운영비를 부담
5. 自然環境保全法	○ 자연생태계를 위해 동·식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하고자 할 때는 정부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입된 동·식물의 목적외 사용금지
6. 有害化學物質管理法	○ 특정화학물질 제조·수입시 유해조사 ○ 건강·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조·수입·판매제한
7. 農林水產業者 信用保證法	○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규모 확대 ○ 신용보증지원대상을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업자에게도 적용
8. 酒稅法	○ 농민·생산자단체의 주류제조 참여 확대를 위해 주류제조면허 요건 완화

Ⅲ. 行政規制緩和와 負擔輕減對策

1. 目標 및 方向

政府는 農漁業人이 농림어업에 종사하면서 느끼는 각종 불필요한 規制와 不便事項들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농어업인의 便宜를 증대시키는 한편 농림어업의 競爭力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정부 출범이후 世界化·地方化 추세에 부응하고 自律農政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農林水産部의 모든 行政組織을 농업인들의 不便事項을 수렴하고 이를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능동적인 農政支援體系를 마련하였다.

현재까지 총 447건의 制度改善課題를 발굴하여 403건을 完了하고 44건을 推進중에 있으며 특히, 그중 制度와 관련된 농어업인 負擔輕減對策은 많은 부분을 완료하였다.

2. 農業人등의 不便事項 解消

가. 推進現況

農·水·畜協 및 農漁民後繼者聯合會 등에 2,300여개소의 『農漁業人不便신고센터』를 설치하여 不便·隘路事項을 수시로 접수하여 이를 수렴,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기술적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진청, 산림청, 수산청에 『現場隘路技術支援班』을 설치 운영하고, 農地 관련 법 등 법령 및 제도로 인한 불편사항은 농림수산부에 『法令·制度改善班』을 설치하여 이를 해소토록 노력하고 있다.

政府는 그동안 改善課題 발굴을 위해 각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하

거나, 現地踏査班을 편성하여 전국 農漁村 현지에서 農業人 등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지금까지 총 325건을 발굴하여 자체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 133개 과제를 選定하여 '95. 9. 15 현재 이중 농업진흥지역내 米穀綜合處理場 설치 허용 등 124건을 조치 완료하고 草地造成許可節次 간소화 등 9건은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나. 主要改善內容

(1) 農政分野

첫째, 農業振興地域 안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은 종전에 3,000m² 까지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10,000m²까지도 가능하도록 허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둘째, 農地所有上限制度를 완화하여 農業振興地域內 農地所有上限(20ha)을 폐지하고, 農業振興地域 밖에서는 현재의 農地所有 상한(3ha)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셋째, 회사형태의 農業會社의 법인제도를 도입하여 經營主體로 육성하고, 農業會社 법인에게도 農地所有를 허용하였다.

(2) 農產分野

첫째, 비료의 포장단위 多樣化로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현행 25kg 단위를 20kg로 개선)하도록 하고,

둘째, 제사업 허가자의 폐업 또는 휴업신고일자를 7일전 신고에서 90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여 잠업농가의 불만을 해소하였다.

셋째, 農業災害 보상시 현재 農耕地 1ha미만 소유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하

고 있으나 이를 2ha미만으로 확대하고, 피해율 보상액도 현재 피해율 50% 이상만이 하고 있으나, 30%이상으로 확대하여 農業災害 지원을 하고 있다.

(3) 農漁村用水分野

첫째, 農地改良組合區域內的 과수·원예농가에 대하여는 미작농가와 차등부과하여 조합비를 감면토록 하였다.

둘째, 農村住宅改良事業을 擴大하여 2004년까지 40~50만호의 農漁村 不良住宅을 현대식으로 집중 개량할 것이며, 이농으로 발생한 농촌빈집의 활용가능 공간에 대하여는 마을의 탁아소, 경로당, 도서실 등으로 정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셋째, 農漁村의 農機械 倉庫, 農水産物 保管倉庫 신축 등의 편의를 위해 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내에서는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였다.

(4) 園藝·流通分野

첫째, 上水源 保護區域내에서의 유리·프라스틱 온실 설치가능 면적을 500m²에서 3,000m²를 확대하고

둘째, 비닐하우스 시설被害 補償대상을 철재, 목재, 죽재에서 파이프비닐, 철골팻트 온실까지 확대하였으며,

셋째, 軍事施設 保護區域내에서의 개축, 100m²이하 농업용시설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군부대 事前 協議를 폐지하고,

넷째, 농업인등이나 생산자 단체가 제조하는 傳統食品에 대한 시설요건 완화, 食品製造·加工業의 申告制전환, 品目製造許可 폐지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5) 畜産分野

都市計劃區域밖의 畜舍建築時 申告로 가능한 면적을 200m²에서 400m²로 확대하였고, 飼料作物種子 供給體系를 畜協으로 一元化하였다.

(6) 山林分野

조림 식재본수를 경영목적과 입주여건에 따라 식재본수를 ha당 3,000본에서 ha당 2,000~5,000본으로 조정토록 하여 산림경영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 등의 보호대상을 제외한 林野에 흑염소사육시설을 허가제에서 申告制로 완화하여 산림의 이용을 촉진토록 할 것이다.

(7) 水産分野

小規模 漁港 관리 제도개선을 위해서 自然漁港인 소규모어항은 어항법에 의한 지원혜택이 없으나, 앞으로 소규모 어항중 항세가 신장된 항은 1·3종(수산청관리) 또는 2종어항(도지사 관리)으로 지정 개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실뱀장어 체포 어업허가제도 개선을 위하여 바다에서 실뱀장어 체포어업은 불법으로 되어 있으나, 실뱀장어 조망어업구역 신설 및 체포어망 설정을 합법적으로 하여 어업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였다.

3. 行政規制 緩和

가. 推進現況

WTO 체제 대응 및 農漁村發展對策 추진과 관련하여 농림수산물의 生産·流通·加工활동에 대한 規制를 합리적으로 調整하고, 농림어업 構造改善의 여건을 조성하며, 농림수산 관련산업에 대한 進入制限 완화로 自律競爭을 통한 자생력과 경쟁력을 함양시키고, 농림어업에 필요한 자원의 보전과 농어촌 지역 2·3차 산업 진입 촉진을 목표로 生産者 및 團體로 부터 行

政規制에 대한 여러가지 不滿事項을 수렴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개별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課題發掘을 추진하여 '95. 9. 15 현재 314건의 對象課題를 확정, 농업진흥지역내의 자경농업인의 농지소유상한 폐지 등 279건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과제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을 통하여 마무리 할 계획이다.

나. 主要緩和內容

(1) 農地·林野關聯 規制의 合理化

(가) 農地·林野取得 要件의 緩和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투기를 목적으로 한 비농민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두고 있는 農地所有資格, 소유상한·매매절차·통작거리·사전거주 제한 등의 농지취득 관련규제를 개방화시대에 농업이 산업으로서의 國際競爭力을 갖출 수 있도록 耕者有田의 원칙내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였다.

첫째, 農業振興地域 안의 자경농업인에 대하여는 농지소유 상한을 폐지하고,

둘째, 민간업체가 농업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試驗·研究·實習 施設을 설치하거나 종묘등 농업자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경우와 회사형태의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였다.

셋째, 농업인이 아닌 자가 자경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할 경우 농어촌에 실제거주기간이 6개월이상 지나야 한다는 규정과 통작거리제한(20km)을 폐지하고 농지취득이 가능토록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을 許容하였다.

넷째, 10,000m²이상의 임야거래시에만 매매증명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나) 農地·山林 轉用制度 改善

첫째, 농수산관련 연구시설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농어업용 시설을 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 7,000m²까지는 市長·郡守에게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공장설치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의 農地에는 10,000m²미만(종전 1,500m²미만)까지 市長·郡守가 전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農業振興地域밖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농지편입 비율제도를 폐지하여 2·3차 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농어촌지역의 經濟活性化를 도모하였다.

넷째, 농한기에만 허용하던 농지개량 목적의 농지 일시전용을 연중 허용하도록 하였다.

(2) 經營活動의 自律과 創意보장

(가) 進入活動의 緩和

첫째, 市·道知事 등록대상 양돈업의 규모를 모돈 500~999두로 상향조정하고, 허가상한을 모돈 2,000두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사료 製造業의 허가제를 登錄制로 전환하고 수입사료 판매업의 신고제를 폐지하였고,

둘째, 양곡가공업 및 매매업 허가제를 登錄制 또는 申告制로 轉換하였으며,

셋째, 비료생산업 및 농약제조업(수입업)의 허가제를 登錄制로 주요농산물중자판매업의 허가제를 申告制로 전환하였다.

(나) 價格決定의 自律化

첫째, 原乳價格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 추진중에 있으며,

둘째, 가축매매수수료는 畜協이 스스로 결정토록 하였고,

셋째, 도축·해체수수료는 도축장 경영자의 자율결정에 맡기도록 하였다.

(다) 生産·技術 規制의 緩和

첫째, 普及機種 농업기계(경운기 등 16종)에 대한 의무검사제를 희망 검사제로 전환하고,

둘째, 糧穀加工, 飼料製造 및 製絲·견방업 시설의 변경과 임대도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셋째, 독립가 및 林業後繼者의 경우에는 자가생산용 극인을 찍어 목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水産業의 경우 소형선망어선(길이 24m, 60톤)의 검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3) 輸出入關聯 規制의 緩和

生絲·穀物·植物類와 水産物의 수출의무검사제를 희망검사제로 전환하여 輸入國이 요청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輸出檢査手數料 납부제도도 폐지하였으며, 상묘수출입 허가제와 외화획득용 소뻬에 대한 輸入規제도 폐지하였다.

그러나 수입농산물의 국내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수입원산지 표시제와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農水産物의 食品衛生檢査制度, 동·식물 검역제도 등과 같이 사회적 규제는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方針이다.

(4) 行政處罰 基準의 緩和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에 근접한 토지(100m 이내)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는 刑事處罰(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던 것을 過怠料로 緩和하는 한편, 안전조업규칙을 위반

한 어선에 대한 行政處罰 基準을 어업인의 自律性이 保障되는 차원에서 대
폭 緩和하여 영세어업인의 불만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수산물 가공업자가 그 제조·가공에 관한 보고의무를 위반했을 때
罰金刑을 賦課하던것을 實効性이 없어 關係規定을 削除하였으며 畜產物作
業場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육류수급의
원활을 기한다는 방침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것이다.

4. 農漁業人 負擔輕減 對策

가. 農漁業 災害支援 對象 확대

재해발생시 零細農家의 생계안정과 차기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하
여 구호적 차원에서 風水害對策法에 의거 시행하는 재해지원의 기준인 『災
害救護 및 復舊費用 負擔基準』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지원대상 농가의 農
家所有 규모를 1ha 미만에서 2ha미만으로 개정하고 支援單價를 현실화하였
으며('94. 7. 22) 금년 10월에는 현행 2ha미만 소유농가로서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게 지원하던 것을 2ha미만의 피해율 30% 이상으로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축산·시설원예등 성장
작목에 대한 災害保險制度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나. 農機械 購入資金 지원

영농규모가 작은 一般農家は 小型農機械 중심으로 2백만원 이하의 農
機械는 반값에 공급하고 2백만원 이상도 1백만원을 補助하며, 農業會社法人등
農機械共同移用組織은 사업비의 50%를 補助支援하고, 專業農에 대하여는 補
助率을 매년 10% 引上하여 '96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大型 農機械의 반값 공급은 영농규모가 큰 農業會社法人등 農機械 共同利用 組織과 專業農 중심으로 공급하며, 전업농에 대한 보조비율을 50%로 상향조정하여 반값 공급하고 전업농 지원농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 배합사료 및 畜産機資材에 대한 附加價値稅 零稅率 적용

축산물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선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副業畜産農家에 대해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 租稅減免規制法을 개정, '95. 10월부터 시행되도록 하여 전국 88만 양축농가에서 연간 650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아울러 畜産農家中에서 구입하는 부화기·착유기·우유냉각기등 畜産機資材 50種에 대해 附加價値稅 零稅率을 적용하여 109억원의 租稅負擔을 輕減하였다.

라. 農漁村住宅 所有者에 대한 不便事項 해소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을 제외한 面單位 지역에 일정 규모 이하의 住宅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지역에서 居住하다가 移住한 경우에는 無住宅者로 인정하여 1가구 2주택 請約制限을 폐지하기 위해 '95. 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相續住宅 및 離農住宅과 연고지나 본적지에 歸農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에 주택을 取得할 경우 都市의 住宅을 讓渡하더라도 1가구 2주택 讓渡所得稅를 비과세하도록 '95. 3월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마. 農漁村 長距離 전화요금 인하

전화요금체계를 개편하여 市內電話料金を 소폭 引上하고, 市外電話料金を 대폭인하하여 도시와 농촌의 통화료 부담을 크게 경감하였다.

바. 零細農漁家の TV視聽料 免除

電氣 사용량이 월 50kwh 이하인 農漁村家口와 難視聽 지역 농어촌 가구에 대해 視聽料를 면제하여 102천가구에 대하여 연 3,060백만원의 負擔을 경감하였다.

사. 農漁家 木돈마련저축 拂入 限度 인상

금융상품중 가장 금리가 높은 低所得農漁家 “木돈마련저축”의 家口당 불입 한도를 연간 72만원에서 연간 120만원으로 引上하고, 低所得 農家에게는 基本金利(10.5%)이외에 高율의 獎勵金(연 8.6%)을 지급(국고, 한은, 농·수·축협부담)하여, 農漁家에 연간 500억원 이상의 惠澤를 부여토록 하였다.

아. 農漁業人の 농어업용 貨物自動車의 有償 運送 허용

농어업인이 農漁業用으로 구입한 貨物自動車를 農畜產物이 共同出荷 또는 共同販賣 등을 위해 有償運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4. 9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IV. 農林水産業 競爭力 強化를 위한 構造改善 對策

1. 目標 및 方向

農林水産業이 국제적으로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競爭力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취약한 농림어업의 전체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림어업경쟁력은 生産要所인 농지구조, 인력 및 노동구조, 자본구조와 기술적 수준 등으로 결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競爭力의 強化 對策은 이들 요소를 합리적·효율적 구조로 변화시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질적, 양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農漁村 勞動力으로 생산성이 극히 위축되어 있는바 農漁村 專門人力의 양성시책을 통하여 노동의 생산성,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둘째, 영농규모가 영세하여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바 農地의 규모확대및 流通性 제고, 생산기반정비, 생산자 조직의 활성화 등으로 농업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셋째, 농업자금이 취약하고 농업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낮아 농업에 대한 자본투자가 극히 미흡함에 따라 정부도 각종 政策資金의 지원과 이의 대출조건등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넷째,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기술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技術開發과 이의 보급을 확대시키고 농림어업 경영자의 經營技術등의 향상대책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 農漁業 專門人力의 育成

가. 노동력의 질적향상으로 생산성 증대

농어촌 勞動力의 양적·질적 저하로 인한 농어업 生産性 향상 둔화, 농어촌사회의 活力 감퇴 등 産業間·都農間의 不均衡 요인을 없애고 국내 농어업을 競爭力있는 技術産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고급 生産技術과 經營技法을 갖춘 농어업 專門人力을 육성하는 것을 경쟁력 강화대책을 위한 구조조정 대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農漁業人 後繼者 支援事業을 내실화하고, 가족단위 專業農을 육성하며, 특히, 앞서가는 전업농을 先導農漁家로 지정하여 모델 경영체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 農漁業人 後繼者를 매년 1만명 선정하여 육성·지원

지난 '81년부터 농어촌인구의 老齡化·婦女化 추세에 대응하여 農漁業人 後繼者 育成事業을 추진하여 '94년까지 총 77,918명의 農漁業人 後繼者를 선정, 8,465억원의 事業資金을 지원하였다.

'89년부터 事業規模가 축소되어 왔으나 後繼人力 확보를 위해 '92년부터 매년 1만명씩 지속적으로 선정·육성하여 專業農·先導農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綜合 支援할 계획이며, '95년도에는 10,476명을 選定하여 1인당 15~30백만원씩 총 2천억원을 個人別 營農漁 事業計劃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다.

〈연도별 육성인원 및 자금지원 현황〉

구 분	'81~'88	'89~'91	'92~'94	'95	합 계
○ 人 員 (名)	43, 443	5,500	28,975	10,476	88,394
－ 農 業 人	39,296	5,050	26,340	9,730	80,416
－ 漁 業 人	4,147	450	2,635	746	7,978
○ 支 援 資 金 (億 원)	3,162	604	4,699	2,000	10,465

다. 2004년까지 15만호의 專業農 육성

農漁業人 後繼者로 선정된 후 3년이상 경과된 자 중 經營實績이 우수한 後繼者에 대하여 '92년부터 專業農漁業人으로 선정하여 5천만원 한도 내의 事業資金을 추가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95년 부터 專業農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專業農이 되고자 신청한 品目を 주된 作目으로 하여 최근 3년이상 그 品目を 계속 경영하고 영농에 필요한 機械 및 裝備 操作能力을 가지고 있는 55세미만 經營主를 專業農 육성 대상자로 선발하여 2004년까지 매년 15천호씩 10년간 150천호(쌀 : 10만호, 축산 : 3만호, 원예·특작·어업등 : 2만호)를 육성할 계획이며,

'95년도에는 쌀 11,435 농가등 총 20,643 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事業資金으로 쌀 專業農에게 農機械購入資金 2,350억원(호당 2,350만원), 農地規模化資金 2,800억원(호당 2,800만원), 밭작물, 채소, 과수, 화훼, 특작, 어업농가에게 1,000억원(호당 5,000만원), 축산농가에게 3,522억원등을 지원하였다.

라. 2004년까지 970명 先導農漁家 育成

專業農중 경영규모, 시설장비, 경영능력 등에서 가장 앞서가는 농어를 '95년부터 2004년까지 총 970명을 선정·육성할 계획이며, '95년에는 70명을 선정하여 호당 5,000만원(자부담 10%포함)씩 35억원을 지원하여 각분야의 모델적 농어가로 양성해 나가고 있다.

마. 農業會社法人의 育成

農業人이 주도적으로 資本과 勞動力을 모아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향상,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에 대처토록 하기 위하여 기존 委託營農會社를 農業會社法人으로 전환하고 租稅·금융상의 지원制度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95. 10월 현재 주식회사 120개를 포함 1,138개 法人이 설립되었고 농기계 구입자금등 64,85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바. 農林水産系 高等學校 육성·지원

自營者 양성 高等學校를 道別로 1~2개교씩 농고 9개교, 수고 3개교를 선정하여 실험·실습시설 및 기자재 등을 農高 1개교당 48억원, 水高 1개교당 40억원을 年次的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 地方國立農科大學을 地域技術 開發의 中心體로 육성

국립농림수산계대학과 산업대학 중에서 特性化大學을 選定하여 첨단 유리온실, 유전공학 등 技術·研究開發에 필요한 施設 및 裝備를 1개교당 30~40억원 범위내에서 年次的으로 지원하여 地域與件에 알맞는 농림어업의 開發과 專門人力의 양성, 農業人등에 대한 技術 및 經營指導 기능을 강화하였다.

아. 個人農家에 대한 經營相談制度 실시

161개 농촌지도소에 기술·경영·농외활동등 綜合相談機能을 갖춘 經營相談室을 설치하여 각종 農業情報를 제공하고 農業人들에게 電算技術을 지도하며, 個別 農家の 特性에 맞는 相談을 위해 150만 전 농가의 영농기반 자료를 電算化할 계획이다.

3. 生産基盤의 整備

가. 2004년까지 전 논면적의 71%를 耕地整理 완료

一般 耕地整理事業은 영농기계화, 쌀 경쟁력 제고대책 등 農業競爭力 강화에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으로 총 논면적(1,267천ha)의 71%인 902천ha를 2004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이며, 農業振興地域의 논 735천ha 중 미정비된 136천ha를 '98년까지 완료하고, 振興地域 밖의 논 167천ha중 미정비된 105천ha는 '99~2004년중 완료할 계획이다. '95년도에는 '94년도에 착수한 28천ha를 營農期 이전에 완료하였으며, 가을에 25천ha 사업착수하여 '96 營農期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일반경지정리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천ha, 억원)

구 분	총논면적	목 표	'94까지	'95계획	'96~'98	'99~2004
○ 사 업 명	1,267	902	661	28	108	105
－ 농업진흥지역	735	735	599	28	108	—
－ 농업진흥지역밖	532	167	62	—	—	105
사 업 비		72,275	28,188	5,161	16,534	22,392

나. 2004년까지 200천ha를 목표로 大區劃 耕地 再整理 추진

필지규모를 3,000평 이상으로 大型化 하고, 用水路를 분리정비, 구조물화하며, 農路를 대형기계 및 농산물의 운반에 편리한 규모로 확장·정비하는 大區劃 耕地再整理 사업을 2004년까지 200천ha를 목표로 '94년부터 農漁村特別稅를 재원으로 신규 착수하였다. '95년도에는 '94년도에 착수한 5천ha를 營農期 이전에 완료 하였으며, 가을에 20천ha를 사업 착수하여 '96 營農期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목 표	'94	'95계획	'96~'98	'99~2004
○ 사 업 량	200천ha	— (5천ha착수)	5 (20착수)	75	120
○ 사 업 비	43,000억원	320	2,931	15,669	24,080

다. 품목별 주산단지에 밭 基盤整備도 추진

전체 밭 765천ha중 開發與件이 좋은 品目別 主產團地(과수, 화훼, 채소, 특용작물단지)를 중심으로 生産者 團體가 잘 조직되어 있고, 事業希望度가 높은 지역등 개발여건이 양호한 110천ha를 대상으로 2조 5,794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94년도에는 3천ha를 대상으로 661억원(국고 60%, 지방비 40%)을 투자하여 進入道路, 耕作路, 管井등을 정비하였으며, '95년에는 2,500ha를 대상으로 550억원(국고 70%, 지방비 30%) 투자계획으로 '95. 10월 현재 進入道路, 耕作路, 管井등을 주요 공정으로 하여 추진 중이다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목 표	'94까지	'95계획	'96~'98	'99이후
○ 사 업 량	110천ha	3	2.5	24.5	80
○ 사 업 비	25,794억원	661	550	6,714	17,869

라. '95년에 200km 機械化 耕作路 확·포장 추진

營農의 전 과정이 機械化, 大型化, 尖端化 되는 추세에서 영농의 편리함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편리를 위해 농업인이 가장 필요로하는 사업으로서 '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 22,000km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95년도에 示範的으로 200km를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추진계획〉

구 분	총 계획	'95	'96~2004	2005~2010
○ 사 업 량 (km)	22,000	200	11,800	10,000
○ 사 업 비 (억 원)	28,600	187	15,340	13,073

마. 排水改善率을 33%로 개선

常習浸水 農耕地 및 低濕畝 207천ha를 대상으로 '94년까지 65천ha가 완료되었으며, '95년도에는 106개 지구에 780억원을 투입하여 이중 24개 지구 3천ha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여 排水改善率을 33%로 개선하고 있다.

〈배수개선사업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94까지	'95계획	'96이후
○ 사업량 (천ha)	207	65	3	139
○ 사업비 (억 원)	20,934	4,530	80	15,624

바. 水利施設改補修

30년이상 경과되어 老朽化로 改補修가 시급한 農組水利施設, 國家 및 地方管理 防潮堤를 대상으로 전체 개보수대상 14,263개소 중 '94년까지 3,974억원을 투자하여 4,673개소를 改補修하였으며, '95년도에도 99개소를 대상으로 9월 현재 92개소를 改補修 완료하였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94까지	'96계획	'96이후
○ 농조수리시설	12,708개소	4,416	70	8,222
○ 국가관리방조제	76	26	4	46
○ 지방관리방조제	1,479	231	25	1,223
계	14,263	4,673	99	9,491
사업비	25,531억원	3,974	937	20,618

사. 農業用水 開發

'94년까지 총논면적 1,267천ha에 대한 用水開發을 완료하였으나, 아직도 수리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95년부터 2004년까지 농업진흥지역내 논 735천ha에 대한 수리시설을 완비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여 新規開發

96천ha를 계획하고 있으며, 用水不足地 150천ha에 대한 보강개발 계획을 추진중이다.

'95년도에는 2,023억원을 투자하여 48천ha에 대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중 6천ha를 완공할 계획에 있고 년차적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계획〉

(단위:천ha)

구 분	총농면적	'94까지	'95계획	'96~2004	2004이후
○ 진 홍 지 역	735	639	6	90	—
○ 비 진 홍 지 역	532	302	—	—	63
계	1,267	941	6	90	63

아. 새만금지구등 대단위 農業 綜合開發事業 추진

河川水系를 중심으로 한 大單位 圈域에 대하여 수자원 확보, 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농지조성 등 生産基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시행중인 새만금지구를 비롯한 8개지구, 139천ha를 대상으로 '94년까지 26%(7,857억원 투자)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고, '95년도에는 33%(국고 1,536억원, 농지관리기금 540억원 계 2,076억원)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지 구 별	개발면적 (ha)	총사업비 (억원)	연 도 별 추 진			사업기간
			'94까지	'95	'96이후	
계(8개지구)	138,790	30,071	7,857	2,076	20,138	
영 산 강 (Ⅱ)	20,700	3,265	2,811	150	304	'76~'97
대 호	7,700	1,856	1,726	85	45	'80~'96
미 호 천 (Ⅱ)	4,430	830	271	80	479	'89~'99
금 강 (Ⅱ)	43,000	4,158	326	160	3,672	'89~2004
홍 보	8,100	2,161	219	230	1,712	'91~2001
영 산 강 (Ⅲ - 1)	7,960	3,280	—	30	3,250	'95~2003
영 산 강 (Ⅲ - 2)	6,800	641	428	120	93	'89~'96
새 만 금	40,100	13,880	2,076	1,221	10,583	'91~'98

※ 영산강(Ⅲ-2) 및 새만금 지구는 방조제 축조 내역임.

4. 技術革新 및 施設現代化

가. 技術革新

전자, 생화학, 유전공학 등 尖端技術의 産業化와 現場隘路 技術 開發을 촉진하기 위해 技術開發 投資를 확대하여 農特稅 재원으로 2004년까지 4,650억원(현장애로기술 1,650, 첨단기술 3,000)을 지원할 계획이며 '95년에는 생산, 판매, 유통, 가공 등 現場隘路技術開發에 300억원과 품종개량, 한국형 시설자동화, 환경농업분야 등 尖端技術 實用化 추진에 31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現場隘路 技術開發은 '94년부터 284건의 研究開發을 추진하고 있으며, 쌀 등 기초농산물, 과수화훼류, 축산, 양잠 등 品目別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農畜產物 交易增加에 따른 病害蟲 및 家畜傳染病의 국내유입 가능성에 대비 早期防疫 技術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農村經濟研究院의 부설기구로 農林水產技術管理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농림수산기술분야에 대한 國內外 技術動向分析, 技術需要調査 및 예측, 技術開發 事業의 장·단기 目標 및 推進戰略 수립, 研究課題의 발굴·선정·평가 및 사후관리, 研究開發業務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 施設現代化

(1) 園藝 및 特用作物

자동화·현대화된 유리온실등 尖端生産施設과 예냉시설등 流通施設을 갖춘 생산·유통 종합단지로서 果樹 900개소, 施設菜蔬 530개소, 花卉 235개소를 2004년까지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高品質의 安全農產物 생산 및 輸出農業基盤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첨단시설을 갖춘 유리溫室 설치를 확대하고, 온실의 標準化 및 施設資材 國產化로 設置單價를 인하해 나갈 계획이다.

— 유리온실:(’94까지) 73ha → (’95) 137 → (2004) 1,150

尖端 栽培技術 개발·보급으로 施設園藝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양액재배, 자동화기술 등을 現場隘路 技術課題로 선정하고 省力化 기술을 개발, 파종·수확 등 전작업을 機械化해 나갈 계획이다.

구	분	사업량	'95 지 원 내 역				
			계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부담
	계	279	435,083	105,666	104,451	138,194	86,772
○ 채	소	80	211,160	53,884	52,669	62,619	41,988
— 시 설	채 소	50	167,750	41,938	41,938	50,325	33,549
○ 과	수	120	138,000	34,500	34,500	41,400	27,600
○ 화	훼	15	57,930	14,483	14,482	17,379	11,586
○ 특 (버섯, 약용작물, 차)	작	64	27,993	2,799	2,799	16,796	5,599

(2) 畜産物

축사시설 현대화, 초지조성, 급이·급수시설 자동화 등 專業 養畜農家 육성·지원을 계속하여 '94년에 3,522억원을 지원하고 生産者團體 및 流通業體 중심으로 생산·도축·가공·판매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畜産物綜合處理場을 '94~'96년 3개소, '95~'97년 2개소, 2000년까지 총10개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95년도에 143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한우고기의 시장 차별화를 위해 韓牛 專門販賣店을 '99까지 700개소 설치목표로 '95년도에 119개소에 255억원을 지원하여 '95년 말까지 34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5. 農林漁業의 1·2·3차 複合産業化

가. 농림어업 관련 附加價値를 농어업인에게 환원

농업인들이 생산뿐만 아니라 저장·가공·유통·판매까지 系列化하여 농림수산업을 複合産業으로 육성함으로써 농림어업의 附加價値를 높이고 競爭力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품목별 專門生産者組織을 육성

·지원해 나가며 벼농사는 米穀綜合處理場과 연결하여 생산·도정·판매를 일괄 수행하는 생산유통업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畜産農家は 규모확대와 병행하여 도축·가공·판매 등의 시설을 갖춘 畜産物綜合處理場과 계약을 통해 사육·납품·가공하여 자기상표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가공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에 대한 食品製造加工業의 인·허가제를 申告制로 전환하고 品目許可制는 폐지하는 한편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나. 米穀綜合處理場을 중심으로 한 쌀 산업 육성

농가가 생산한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판매과정을 종합적으로 一括處理하는 現代化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확대하여 쌀의 생산비와 유통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고품질의 지역별 특산미를 공급해 나가는 한편 수확기에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매·저장하여 가격안정 및 가격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94년까지 147개소인 미곡종합처리장을 2004년까지 400개소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면서 인근 쌀 작목반과 契約栽培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畜産系列化로 고품질 국내육 소비기반 확보

전문경영체가 생산·가공·유통을 綜合的으로 경영함으로써 양축농가는 일정소득을 보장받으면서 생산에 전념하고, 도축·가공·판매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문 경영체는 양질의 축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토록 하기 위해 축산계열화를 지원하고 있다.

축종별 계열화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돼지계열화는 10개업체가 중심이

되어, 590농가가 참여하고, 육계 계열화는 11개업체에 1,100농가, 산란계 계열화는 3개업체에 140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라. 농업인등 加工産業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농수산물 加工으로 얻어지는 부가가치를 농업인등에게 환원하고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市場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농업인등과 생산자단체의 가공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다.

농업인등이 쉽게 가공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食品衛生法을 개정하여 市長·郡守에게 申告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品目許可制를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였으며,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는 가공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및 지도를 실시하고, 농협중앙회 등에서는 경영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加工産業體에게는 시설건설 및 설비, 포장개선사업, 원료구입자금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95년에는 191개 업체에 69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傳統食品의 국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常設展示販賣場을 '95년 1개소를 비롯 2004년까지 10개소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며 우편판매제도, 택배제도등을 도입하여 실시중에 있다.

6. 농림수산물 輸出振興 및 輸入管理對策

가. 농림수산물 輸出振興

(1) 국내 輸出農業 基盤 구축

경쟁력있는 수출전략 품목 위주로 농림수산물 輸出專門生産團地를 '94년도 49개소에서 2004년까지 144개로 확대·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올해 10

개소를 지정하였다. 또한 잠재수요가 큰 가공식품 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원료수매 자금등으로 '95까지 1,03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95 3/4분기에 농수산물 수출액이 24.4억불에 달하여 전년동기 대비 16.7%나 증가했으며, 특히 양파 1,760.0%, 사과 244.4%, 선인장 69.2%, 돼지고기가 39.1% 증가되었다.

〈농림수산물 수출전문 생산단지 확대 조성계획〉

품 목 별	'94년까지	'95	2004까지
채 소 류	1	2	21
과 실 류	4	5	30
화 훼 류	4	3	53
돼 지 고 기	40	—	40
계	49	10	144

(2) 輸出情報體系 개선

農水産物流通公社에 『수출정보종합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공급하고 세계 주요 권역별 輸出市場에 대한 食品調査를 실시하여 수출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농업인등 또는 輸出業體에 공중전산망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3) 海外 농수산물 市場開拓 및 弘報 강화

'94까지 미국, 일본 등에 4개소를 설치운영중인 海外 展示販賣場을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95년도에는 싱가포르에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지에서 수출수주를 받고 국내 농산물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國際 農 產物博覽會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95년도에 307개 업체에서 10,492만불의 수출계약 성과를 올렸으며, 해외시장에 市場開拓團을 파견하고 있다.

(4) 輸出支援體制 개선 및 資金支援

영세한 수출업체의 수출에 따른 위험을 경감하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農水產物 輸出保險制度를 '95.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 수요에 부응한 품종개발·생산·가공시설 현대화·수송체계지원 등 輸出基盤을 정비하여 수출용 우수 농산물의 국내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출관련 예산 및 자금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과실류, 화훼류 수출에 대한 포장·자재비, 운영비 등 間接經費 支援으로 '95년도에 1,629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용 원료 농산물 구매자금 및 수출업체에 대한 시설·운영 자금 지원으로 1,29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나. 농림수산물 關稅制度 改善 등 輸入管理

(1) 關稅制度 개선

UR協商結果 확정된 關稅相當值(TE), 高率讓許關稅(CB), 市場接近物量(CMA, MMA) 및 이에 적용되는 低率의 讓許稅率 등의 國際協力關稅를 關稅法에 수용, 시장접근물량 이외에는 高率關稅가 적용되는 2중 關稅制度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주요농축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관세제도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저가의 농산물 수입급증을 막기 위하여 고추, 마늘, 양파 등 63개 품목에 종량세를 신설하였다.

또한 농림수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一定物量을 초과하거나 국제농산물 價格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 국내농업 보호를 위해 WTO에 양허한 관세율에

추가하여 特別緊急關稅를 신속히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關稅法을 개정하여 시행중이다.

(2) 市場接近物量 등 輸入管理制度의 정비

금년에 새로 개방된 品目에 대하여 輸入動向을 면밀히 점검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關稅廳과 연결된 일일 自動點檢 體系를 지속운영하고 『農水産物 貿易協議會』 및 『品目別 分科委員會』를 활성화하여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무역업계 등을 참여시켰다.

또한 低率關稅로 도입되는 시장접근물량은 國營貿易, 輸入權 公賣를 통하여 국내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입물량을 조절하여 유통교란을 억제하고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에 따른 輸入利益金도 농안기금 등 관련기금으로 흡수하여 국내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사업등에 再投資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한편, 中國産 등 저가농산물 수입증가에 대비한 관리대책으로 다양한 조치를 활용하고 있다.

- 特別緊急關稅 부과('95. 8현재) : 땅콩, 메밀 등 73건, 32억원
- 調整關稅 부과('95 하반기) : 당면, 표고버섯, 참돔 등 21개 품목
- 原產地 表示制 및 국내산 둔갑 판매단속('95. 7월말 현재) : 31,845건

〈시장접근물량 수입창구 및 이익금 납입〉

관련법률	구 분	수입추천권자 및 수입창구	대 상 품 목	납입기금
양곡관리법	국 영 무 역	조 달 청	쌀	양 특 회 계
		농수산물유통공사	식용콩, 팥, 녹두, 감자	농 안 기 금
	실수요자추천	농 협 중 앙 회	고구마, 전분류, 매니옥, 맥주보리, 맥아	-
축 산 법	국 영 무 역	축산물유통사업단	쇠고기	축 발 기 금
		축 협 중 앙 회	천연꿀	
	수 입 권 공 매	축 협 중 앙 회	돼지고기, 닭고기 등	
		한국유가공협회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농 안 법	국 영 무 역	농수산물유통공사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땅콩	농 안 기 금
		제주감귤협동조합	오렌지, 감귤	제주감귤협동 조합에 지원
	수 입 권 공 매	농수산물유통공사	참기름	농 안 기 금
산 림 법	국 영 무 역	임 협 중 앙 회	잣	산림개발기금
	수 입 권 공 매	임 협 중 앙 회	밤, 대추	
사료관리법	실수요자추천	축 협 중 앙 회 및 사 료 협 회	사료용 옥수수, 배합 사료, 매니옥(사료용)등	-
		대 두 가 공 협 회	사료·착유용 대두	
잠 업 법	실수요자추천 (국 영 무 역)	생 사 수 출 조 합	누에고치, 생사	잠업진흥기금
주요농작물 종 자 법	실수요자추천	장 관 또 는 종 자 공 급 소 장	종자용감자, 종자용 옥수수, 종자용콩 등	-
종묘관리법	실수요자추천	과 수 묘 목 협 회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등	-

다. 動·植物 檢疫機能 및 原產地表示制 強化

(1) 動·植物 檢疫機能 강화

WTO/SPS협정과 조화되도록 동·식물검역 관련법규와 제도를 정비하고 有害病害蟲이 부착된 농림수산물의 국내유입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도록 동·식물검역 專門人力을 대폭 증원하는 한편, 검역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教育訓練(8주이상)을 실시하고 있다.

－ 식물검역 인력 : ('94)230 → ('95) 267명

－ 동물검역 인력 : (94) 169 → ('95) 203명

장기적으로 檢疫施設·裝備 現代化 5個年計劃('92~'96)을 '95까지 앞당겨 마무리하도록 하고 '96~'98 이행할 2단계 『檢疫發展對策』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 '93~'95기간중 시설·장비보강 : 207억원(식검 48, 동검 159)

(2) 原產地表示制 適用 확대 및 團束 強化

輸入 農水産物의 국내산 둔갑을 방지하여 국내 농수산물의 被害를 예방하고 농수산물시장의 流通秩序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입농산물 189개 품목(농산물 130, 임산물 15, 축산물 33, 수산물 11)에 대하여 原產地表示制의 적용을 확대하고 團束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 懲役 또는 3천만원이하 罰金이나 過怠料 부과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여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95. 1월부터 63개 농수산물에 대해 생산지 시·군 명을 표시하도록 하여 우리 농수산물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개선 및 소비자 보호를 기하고 있으며, '96. 1. 1부터는 加工食品의 原料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V. 品目別 競爭力 強化 對策

1. 目標 및 方向

競爭力 強化를 위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적인 계획아래 구체적인 品目別 競爭力 強化 對策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선 품목별 경쟁력 강화 대책은 각 品目에 대하여 현재의 경쟁력 수준과 재배면적, 생산액, 自給度, 농가소득 기여도, WTO 이행 계획, 수출입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수립하였다.

첫째, 國際競爭力을 바탕으로 輸出이 유망하거나 輸出 잠재력이 있는 품목, 농가소득의 기여도가 크거나 輸入農産物의 對替가 가능한 품목등은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戰略的 品目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둘째, 國民食糧의 안정적인 공급과 農家所得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쌀·한우 등을 국민기호에 부응하고 국내품목의 優位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수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셋째, 기타 품목은 지역특화작목으로 선택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2. 쌀 産業

가. 쌀 産業의 與件 變化

(1) WTO 協定 履行 內容

쌀에 대해서는 농업협정문상의 特別取扱條項(Annex 5, Section B)을 적용하여 2004년까지 10년간 關稅化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에는 最小市場接近物量으로 '95년도에 51천톤(1%)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205천톤(4%)을 수입하게 되었다.

(2) 대내적 與件 變化

벼 栽培面積이 '95년에 1,056천ha로 '88년 이후 연평균 약 26천ha 정도 감소하고 있는 반면 10a당 數量은 '70년대 350~400kg에서 '90년대에는 450~460kg 수준으로 증가 추세이며, 쌀 生産量은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88년 이후 감소추세이며, 최근 1인당 연간 쌀 消費量도 연평균 2.6kg씩 줄어들어 따라 총 소비량은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 추세이다.

나. 쌀 산업의 目標

식량소비용 쌀은 현재의 自給水準을 계속 유지하고 2001년까지 쌀 生産費를 47% 절감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경지정리, 직파재배, 고품질 다수성 품종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다. 主要推進事業

耕地整理는 필지의 구획화, 규모화와 함께 배수개선, 농로개설 등을 시행하여 중·대형 機械化 營農基盤을 조기에 실현하고, 전업농 10만호, 농업회사법인 2천개소 등 규모화된 경영체가 전체 재배면적의 60% 이상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농작업의 완전 機械化를 위해 중·대형 농기계로 전환하고, 저온 발아성, 심근성 등 직파재배 적응성이면서도 고품질 다수성인 新品種을 개발하여 단위수량을 10a당 459kg에서 510kg까지 늘려 生産費 節減에 기여토록 하고, 米穀綜合處理場과 연계한 생산·가공·유통의 일관화로 유통비용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1) 生産基盤 정비

農業振興地域內 논의 一般耕地整理 사업은 '98년까지 완료하고, 用水開發은 경지정리와 병행하여 완공위주로 2001년까지 1,082천ha에 대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농업진흥지역내 논 139천ha에 대한 排水改善事業을 '98년까지 완료하고(2001년까지 207천ha), 2004년까지 경지정리지구내 農路 12천km를 擴·鋪裝할 계획이다.(2010년까지 22천km)

(2) 營農規模 확대

5ha이상 전업농 3만호, 3~5ha 전업농 7만호 등 총10만호 육성을 목표로 농지매매, 임대차, 교환 및 분합 자금지원 등으로 所有規模의 점진적 확대와 貸貸借 活性化를 도모하고, 영농조합법인에게 농지매매자금, 농기계구입자금, 영농자금등을 지원하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등 組織營農體를 통한 營農規模의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3) 機械化

농기계 구입 지원을 위해 농가와 농기계 이용조직의 農機械 購入費에 대한 보조와 융자를 실시하고, 농업기계용 免稅油 공급등 농가부담을 경감시켰으며,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시설설치자금, 농업경영비등을 지원하여 이들 농업기계 이용조직을 육성하고,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에 대한 부품 확보자금지원 등 사후관리와 農村指導所를 중심으로 한 技術訓練을 강화하고 있다.

(4) 省力栽培技術 보급

농안벼, 주안벼 등 직파재배용 장러품종개발, 1,500여개소의 직파거점 단지 설치, 파종기 및 제초제 신규보급 및 기술지도를 강화하여 直播栽培를 확대하고, 무경운, 최소경운재배로 勞力費를 절감하며, 시비 및 방제 회

수를 줄이고, 무인헬기를 개발하여 施肥 및 病蟲害 防除를 省力化하고 米穀綜合處理場과 연계한 범용 콤바인을 이용한 產物 收穫을 실용화하여 쌀 生産費를 줄어나갈 계획이다.

(5) 土地用役費 감축

전업농, 법인 경영체등의 육성을 통해 영농규모를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賃借地 比率를 높아지고 있으나, 선진 외국에 비해 아직 높은 賃借料가 높아 벼수확후 보리, 시설채소, 사료작물등의 재배 확대로 토지용역비를 벼농사와 후작에 분산하도록 하여 임차료율을 감축할 계획이다.

(6) 品質向上

10a당 500kg이상의 단위 수량을 올릴 수 있는 쌀밥용 高品質 品種을 육성하고, 향미벼, 양조벼 등 가공용등의 特殊米 品種을 개발하며, 普及種 공급량 확대로 고품질 우량종자의 종자 갱신을 제고하며, 施肥量 조절등 재배기술을 개선하고 米穀綜合處理場과 연계하여 건조, 저장, 가공등 수확 후 관리기술을 개선하여 쌀 品質向上을 도모하고 있다.

3. 園藝產業

가. 품목별 특성에 맞게 전략 수립

主産團地 生産者組織 중심으로 기계화, 시설자동화를 통해 규모화된 專業的 經營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사과·배·시설채소·꽃등은 경쟁력이 있으므로 戰略輸出產業으로 육성하며, 감귤은 생산자조직을 통한 생산조정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추·마늘·양파등은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生産費 節減 및 自律的 需給調節을 유도한다.

나. 세부 품목별 주요 추진 계획

(1) 菜 蔬

(가) 양념채소

○ 생산자조직을 통한 規模化 및 농가중심의 生産·流通 支援

고추, 마늘 등 품목별로 주산단지 조합 및 농민대표를 중심으로 生産者 組織을 육성하여 농가 스스로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가공·유통사업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需給安定을 기하도록 하고, 양념류 전업농을 매년 800명씩 선정하여 規模化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또한 종합처리장, 공동육묘장 등 주산단지 生産·流通施設을 2004년까지 170개소를 설치하여 관수시설 및 이식기 등을 종합지원하며 專業農과 零細農 生産·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民間企業이 직접 생산하고 유통·가공에 참여토록 하는 등 유통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기술개발 및 기계화 지원으로 生産費 節減

2004년까지 전작업 機械化가 이루어 지도록 省力機械化 技術을 개발해 나가며, 고추 1회 수확품종 등 品種 및 栽培技術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需給 및 價格安定

농가 스스로 생산·출하하는 自律的 調節에 의한 가격안정이 이루어 지도록 수급·가격 예측정보를 전파하고, 각종 기금을 생산자조직에 지원하고 있다.

(나) 시설채소

○ 經營規模 확대 및 省力化

시설면적 5ha 이상의 시설채소 專門組織을 2004년까지 530개소 조성하고, 육묘와 재배를 分業化하여 노동력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 綜合支援體系 구축

농촌진흥청, 농어촌진흥공사 등 전문분야별 역할 분담 및 中央技術支援團을 구성하여 기술·정보를 제공하며, 농촌지도소 중심으로 농가 애로사항을 one-stop 해결할 계획이다.

○ 시설자재 標準·規格化와 國產化

지역별 작물별로 標準設計圖를 개발·보급하고, 산·학·관·연 합동 연구로 현장위주의 實用的인 技術을 개발하며, 원예시설, 자재 전문업체에 대한 농업용 기자재 생산시설자금을 '92년 부터 매년 35억원 지원하고 있다.

○ 안정적 輸出擴大 기반조성

오이, 가지, 토마토 등 輸出可能品目を 대상으로 수출단지를 2004년까지 21개소를 조성하고, 일본을 수출전략 시장으로 중점 개척하며 標準規格出荷 촉진 및 輸出 收買支援資金을 확대하는 등의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農水產物流通公社를 통해서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해외시장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 果 樹

(가) 생산·유통·가공·수출등 종합지원사업 실시

2004년까지 生産流通組織 900개소를 중점 육성하는 등 경쟁력있는 생산자조직 및 전업농을 육성하고, 작업로 개설, 관배수시설 토양개량 등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生産基盤 施設을 개선하며, 스프링쿨러, 굴삭기 등 노동력 절감 機械 및 栽培技術 普及으로 노동시간을 감축하여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고 있다.

또한, 品目別 生産者組織 중심의 생산·출하조절, 유통기반시설 확충지원 등 산지유통체계 개선으로 유통효율을 극대화하며, 50ha기준 30개소의 輸

出團地를 조성하여 생산기반시설, 산지유통시설등을 우선 지원하고, 海外市場 開拓을 지원한다.

(나) 生産·流通 지원사업

동일 과종 재배면적이 20ha 이상인 生産者組織 및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시·군 농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생산자조직에 대하여는 산지유통시설등 共同施設을 지원하며,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생산기반시설 및 농기계를 지원하는 등 組織 中心의 생산·유통 체계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 花 卉

(가) 安定生産基盤 조성

지대별 적정 작목을 선정하여 特化作目으로 육성하고, 절화·분화등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생산·출하등을 자율 조정토록 유도하며, 현대화된 생산 및 유통시설 등을 일괄지원하는 花卉生産流通團地를 2004까지 235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나) 流通改善

대도시 法定 都賣市場(공판장)을 확대 설치하고, 양재동 花卉共販場 출하량 확대 등 운영을 활성화하며, 규격출하품 包裝材 지원 등 規格出荷를 확대하고 화훼공판장에 流通 情報室을 설치·운영하는 등 유통정보수집 및 분산체계를 구축한다.

(다) 輸出團地 育成 확대

화훼 생산·유통지원단지중 輸出有望作目 栽培團地 53개소를 2004년까지 수출단지로 육성하여 출하조절자금 융자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4. 畜産業

가. 目 標

축산업 구조개선 촉진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하며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 등을 통해 맑고 깨끗한 환경 보전형 축산업을 육성한다.

나. 主要推進事業

(1) 韓牛産業

○ 한우 전업농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

2004년까지 26천호 專業農 육성을 위해 한우 사육농가, 협업체, 영농조합법인 및 축협조합등 한우사육에 필요한 입지를 확보한 경영주체에게 목로등 飼育基盤 施設, 축사등 飼育施設, 초지조성등 粗飼料 生産기반 및 장비등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도기관, 축협 등 생산자단체는 소관별로 이들 경영주체에 대한 技術 및 經營指導를 실시한다. 개인은 1인당 2억원,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축협은 400%) 한도내에서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95에는 3,125개소(농가 2,922, 영농조합법인 30, 협업체 79, 축협 15)를 대상으로 1,15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 한우개량사업의 강화

풀 자원이 풍부한 산간오지의 소득수준이 낮은 面單位 지역으로서 한우 암소 사육비율이 높고 300두이상 基礎登錄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젖소 및 비육우 사육 확대가 예상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우개량단지를 指定, 種牝牛 계획교배, 우량암소 기반구축, 참여농가에 대한 사료비 지

원, 관리조합에 대한 관리비용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 '95 지원계획 : 250개소('95 신규단지 50개소), 16,047백만원 지원

'95년부터 改良團地막의 농가중에서 한우암소를 1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韓牛改良農家를 지정하여 韓牛改良事業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소 電算化를 추진하여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개량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한 한우를 保證 種牡牛로 선발(12두)하여 우수한 韓牛 精液을 생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므로써, 韓牛改良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95년도에 9,73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축산기술연구소, 도 종축장, 축협, 종축개량협회등 家畜改良機關간에 電算網을 연결하여 개량정보의 신속한 수집, 분석, 활용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95년도에 80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 소 수급관리 전산화 추진

한육우·젖소 사육농가에서 생산되는 송아지에 대하여 고유번호가 부여된 바-코드 이표를 장착하여 전산입력 관리함으로써 국내 소 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한우 전문판매점을 확대 설치하여 수입육과 차별화

지정 韓牛專門販賣店에서 冷蔵肉을 판매토록 하여 국내 육류 유통을 냉장육으로 전환하고,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확보하며, 쇠고기 輸入 自由化 이후에도 한우고기의 안정적인 판매장소로 육성하기 위해 '99년까지 700개소 설치 지원을 목표로 축협중앙회 등은 大規模 매장을, 축협조합·일반식육 판매점 등은 小規模 매장을 설치토록 하고 사업대상자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다.

- '95 지원계획 : 119개소, 255억원

(2) 酪農產業

○ 전업농 지원을 강화하고 우량젖소 보급 확대

2004년까지 전업농 12,000명 육성을 위하여 사육기반시설, 축사 및 사육시설의 자동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장비지원등 낙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종합 지원한다. 농가 1인당 2억원, 법인은 자본금의 200%(축협등 공공기관은 400%)한도내에서 지원해 나가고 있다.

- '95 지원계획 : 2,096개소(농가 2,016, 법인체 25, 협업체 45), 744억원

또한 산유능력 檢定을 확대하고 국내산 保證 種牡牛 선발 확대로 우량 정액 보급을 확대하며 수정란 이식등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95년도에 5,079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 전문적인 헬퍼요원을 파견, 목장관리 대행

생산자단체인 畜(酪)協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헬퍼요원이 일정 기간(1-3일간)동안 목장관리를 대행토록 하고 헬퍼요원의 인건비, 지도차량 구입 및 착유시설 점검장비 구입비 등을 보조지원하고 있으며 '95년에는 6개조합에 10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 유통개선으로 집유비용을 절감하고 원유검사의 신뢰성 제고

원유의 집유 및 檢査業務를 지역 축(낙)협으로 一元化 하여 집유비용 절감 및 원유검사에 대한 불신감이 해소되도록 낙농진흥법을 개정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유업체의 직판점 운영, 슈퍼체인 등에 대한 직 공급으로 유통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지역 낙협과 유업체와의 OEM 방식에 의해 생산 공급하는 유통체계를 도입하는 등 지역별 낙농조합의 시유생산을 지원한다.

(3)·養豚產業

○ 전업농 육성 지원과 종돈장등 시설개선 지원

2004년까지 專業農 5,000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후 2년내에 500두 이상을 가족 노동력으로 사육할 수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하여 사육기반시설, 축사등 사육시설, 장비 등을 종합지원한다.

- '95 지원계획 : 1,734개소(농가 1,715, 조합 14,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5), 1,169억원

돼지고기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우량종돈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95년도에 돼지능력검정소의 시설·장비자동화 등에 97백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검정소 검정을 내실화하는 한편, 질병오염에 대한 양돈농가들의 우려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96년부터는 원종돈과 종돈을 계열화하는 전문종돈업체를 적극 육성하고, 돼지능력검정소에 격리조기이유(SEW)방식에 의한 검정시설을 설치하며, 위생 및 방역관리 우수농장에 대한 정부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국내돈육의 브랜드화 등 품질개선 추진

축협, 영농조합법인, 정부지정 계열화 업체를 대상으로 團地構成 농가, 自體 또는 연계 種豚場의 사육시설, 도축, 가공장 등 시설개선자금지원 및 일정규격 이상의 위생적인 돼지를 출하하는 농가에 대하여 생산자재(후기사료)를 지원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유통활성화 자금과 국내시판 돈육의 브랜드화 및 직판장 설치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95 지원계획 : 가공직판장 5,260백만원, 돼지고기 품질개선 9,250백만원, 가공 잔여육 유통개선 11,160백만원

(4) 養鷄產業

○ 전업농 육성 지원과 닭 개량사업의 추진

2004년까지 專業農 2,100호를 육성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후 2년내에 3만수 이상을 가족 노동력으로 사육할 수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하여 사육기반시설, 축사등 사육시설, 장비 등을 종합지원하고 있다.

— '95 지원계획 : 526개소(농가 520, 법인체 2, 협업체 4), 529억원

검정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로 經濟檢定能力을 활성화하여 우량계종 선택지표를 제공하고, 검정규모를 확대하며, 재래닭의 高品質 肉用化로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국내 닭 육종회사를 대상으로 국산 種鷄 開發을 위해 '95년도에 검정소 1개소에 대해 498백만원을 지원한다.

○ 계란가공시설 지원으로 부가가치 제고

民間主導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고, 도계시설, 부산물 처리시설 등을 현대화하고 계란가공시설 지원 등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이를 위해 '95년에 도계장시설 현대화를 위해 7개소 4,500백만원, 도계부산물 처리시설을 위해 10개소 4,100백만원, 계란 가공시설을 위해 2개소 1,400백만원등을 지원하고 있다.

(5) 畜產物流通改善

○ 畜產物綜合處理場을 2000년까지 10개소 설치

2000년까지 10개소 설치를 목표로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 중심으로 생산, 도축·가공, 판매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소, 돼지를 부분육·냉장육·브랜드육 유통체계로 전환하여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高品質 肉類를 供給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1개소당 처리능력은 1일 소 100두, 돼지 1,500~2,000두 정도으로써 '95년에는 3개소를 대상으로 14,279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 육류 도체등급제를 실시하고 식육기술 교육을 강화

도축, 소매단계에서 육질에 따른 差等價格 去來制 정착을 위해 육류도체 등급제 실시를 의무화하여, '95. 2. 6부터 서울,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95. 10. 1부터는 광역시이상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96년까지 食肉處理 技術訓練院을 건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식육처리 기술분야 國家技術 資格制度 도입을 추진하며, 한우고기 및 냉장육의 우수성에 대한 소비자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선 식육처리 기술훈련원 건립이전에는 식육처리기술교육을 우선 실시하여 '95년에는 480백만원을 지원하여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6) 飼料産業의 競爭力提高 및 粗飼料 생산지원

○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飼料製造業의 허가제를 登録制로 전환하고, 수입원료 곡물 및 배합사료에 대한 安全性 검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殘留農藥檢査등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과 함께 '95. 10. 1부터 부업규모 농가에 대해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사료생산기반 조성 등 조사료 생산을 적극 지원

신규 초지조성의 어려움으로 既成草地 보완 및 飼料作物 栽培에 중점 지원하고 영세토지의 분합, 용수원 개발, 목장도로 건설 등 조사료 생산성 증진을 위한 生産基盤을 개선하며, 겨울철 논뒷그루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生産資材(종자, 비료)를 지원하고, 소사육이 단지화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계 공동이용단지를 조성하며, 볏짚수거용 기계보급과 볏짚의 암모니아처리 이용으로 사료 영양가치를 증진시켜 볏짚을 최대한 활용한다.

(7) 축산분뇨의 자원화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정화시설 운영비 절감 및 유기농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가축분뇨의 액비화, 퇴비화 등 자원화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분뇨처리지원 예산 확대:('93) 600억원 → ('94) 860 → ('95) 1,095

5. 水産業

가. 目 標

연근해어선 감축 및 어선의 현대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연안수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며, 해면 양식어업 발전을 위한 고소득 양식품종 개발, 담수어 집약양식 등 내수면 사업의 활성화와 원양어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나. 推進課題

(1) 沿近海漁業

沿近海漁業 構造調整事業 추진

연근해 자원수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漁船勢力을 감축하여 생산성 저하 및 어업자원고갈을 방지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어민소득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沿近海漁業 構造調整事業은 치어 혼획율이 높은 어업은 어업자원 회복을 위하여 폐지하거나 전업을 추진하고 어획 강도가 큰 어업은 어선세력 감축조정을 통하여 적정 어획 강도를 유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연안어업은 폐선후 보상하고 近海漁業은 업종별 수협을 통한

殘存者 負擔方式을 병행 감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연안어선 감척 : ('97까지) 6,495톤, 53,981백만원 지원
('95) 1,224톤, 11,575백만원 지원
- 근해어선 감척 : ('97까지) 4,030톤, 10,053백만원 지원
('95) 840톤, 1,991백만원 지원

周邊水域 자원보호 및 관리강화

'94. 11. 16 유엔海洋法 協約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 周邊水域에서 는 인접국인 중국, 일본과 경쟁적 조업으로 인한 資源의 濫獲防止가 최대 현안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의 해결을 위하여 새로운 국제적 해양질서에 따른 공동자원 관리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에따라 韓·日漁業協定の 이행 및 韓·中 漁業協定 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여 주변 인접국과 자원공동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등 우리나라 주변 수역의 어업자원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水産資源 造成事業의 확대 실시와 연안어장 보전을 위한 깨끗한 바다 가꾸기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어업자원 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 인공어초 시설확대 실시 : ('94까지)89천ha → ('98까지) 183천ha
- 수산종묘배양장 증설 : ('94까지)11개소 → ('98까지) 20개소
- 어장정화사업 추진 : ('94까지)134천ha→('98까지) 302천ha
- 어장정화선 건조 : ('94까지)3선단 → ('98까지) 10선단
- 연안 시도·시군, 어촌계별로 바다청소 책임구역제 실시

不法漁業의 지속적 團束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에 불법어업 근절대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어업질서 확립을 추진하고 매스컴을 통한 대국민 홍보로 어민의식을

계도하고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보강하고 있다.

- 지도선 증척 : ('94까지) 76척 → ('98까지) 98척

漁船現代化 및 漁船員 需給對策 강화

漁船의 현대화 및 어업기계화 촉진으로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漁業省力化를 위한 어업별 標準漁船型 經濟性漁船의 개발과 어구어법의 기계화, 자동화로 인력 및 경비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漁船員의 원활한 수급과 어선원 고용이 용이하도록 해기사등 兵役特例를 현재 어선 5척이상 총 톤수 1천톤 이상의 보유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원양어업 및 근해어업을 영위하는 업체에서 업종별 소속조합원의 소유어선을 조합소유로 보아 特例業體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개선하여 어선원 부족난을 개선할 계획이다.

(2) 海面養殖漁業

高所得 養殖品種 개발 및 漁村契所得源 개발

고소득 양식품종인 어류, 진주, 가리비 등의 養殖漁場을 적극 개발하여 확대하고 양식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늘려 안정적으로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共同漁場 인근수역의 養殖適地를 개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다수어민의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각 지역특성에 적합한 양식품종 및 양식기술을 개발·보급하여 양식품종 다양화를 통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養殖漁場 정비 및 漁場 環境 개선

지속적인 양식 실시로 어장이 노화되고 불규칙적인 양식시설 배치로

조류 소통이 불량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개선하기 위해
만 또는 대단위 수면단위로 환경을 개선하고 어장을 재배치하여 합
리적인 어장이용을 도모하고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기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漁場의 立體的 利用 개발 및 제도개선

한정된 수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현행 1개 품종만 양식할 수 있
는 제도를 개선하여 동일수면에서 2개품종 양식이 가능한 품종에 대
해서는 복합양식을 허용함으로써 양식어민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과
아울러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 양식어민들이 양식에
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어민 편의위주로 개선하고자 한다.

(3) 내수면어업

淡水魚 集約 養殖

水産物 輸入開放에 대처하여 농어가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과 담수어
집약생산시설 확충을 통한 內水面 養殖業 활성화를 위해
'95년도 부터는 양식업의 경영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
해 2004년 까지 淡水魚 養魚場 시설 244개소(48,800백만원), 대단위
담수어 養殖 團地 造成事業 36개소(46,800백만원)를 지원하여 생산
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유희 농경지를 개발하는 등 수산물 수입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淡水魚 流通構造改善

담수어 소비 저변확대 및 유통단계 개선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를 위하여 淡水魚 主團地와 消費都市에 담수어 流通(直賣場)시설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95년도에는 2개소(1,000백만원)를 지원하였고, 2004년까지 31개소 15,214백만원을 지원하여 유통단계 축소 및 담수어 소비촉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4) 遠洋漁業

1997년 수산물 수입의 완전개방화에 대처하고 외화가득률이 높은 輸出 産業으로서 遠洋漁業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요 연안국과 기 체결된 漁業協定을 보완·발전시키고, 國際 水產機構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원양어업의 입지와 기득권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원양어업 運營資金의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성있는 어선이 원활히 대체될 수 있도록 그동안 업계의 숙원이었던 中古漁船의 도입 및 용선 제한을 대폭 완화한 바 있으며, 특히, 영해 및 합작어획물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추진하고 있어 금후 자유 무역 체제하에서 획기적인 경영개선의 효과를 가져와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어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러시아, 프랑스 등 14개 연안국과 기 체결된 漁業協定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서양 참치보존위원회(ICCAT) 등 9개의 國際 水產機構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원양어업의 기득권 유지와 함께 입지를 강화하고, 노후어선 대체용 中古漁船의 도입선령을 크게 확대(13년→21년)하여 경제성 있는 어선으로 원활히 대체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외생산지원자금과 영어자금등 遠洋漁業支援資金 2,060억원을 확보 지원하여 경영안정화를 도모하였고,

遠洋漁業의 操業區域 확대(국가별 소해역→대양별), 허가기간연장(1-3년→5년) 및 업종간 轉業許容으로 원양업체의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어획물 반입절차 개선(해외공판장 확인→원협회장 경유 수검소장확인), 양륙항 지정제도 폐지 및 漁獲統計報告 제도를 개선(분기별→반기별)하여 어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원양어업의 대외경쟁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6. 林 業

가. 目 標

經濟林 造成, 林道施設 확충, 機械化 촉진 등 경영기반을 확충하고, 林業의 産業化를 위한 기술개발 및 山林環境, 生物工學研究를 촉진시켜 임업의 競爭力을 제고한다.

나. 推進課題

(1) 山林資源 조성

산림자원조성 방법을 수종갱신 조림 위주에서 優良 天然林 保育으로 전환하고 育林事業을 확대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산림자원 조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 산림에 대한 입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95 조림 : 25천ha, 육림 : 239천ha

(2) 經營基盤 확충

林道施設 확충

전국의 임도망을 국도·지방도와 연결되는 幹線林道 위주로 2010년까지 56,000km 시설을 목표로 '94년까지 7,114km를 설치하였으며 완벽

한 林道施工을 위해 설계 및 시공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機械化 촉진

산지여건에 알맞는 韓國型 機械開發 및 보급을 위해 林業機械化 基本計劃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한 기술지도 및 사후관리를 위해 林業機械化 地域센터 설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林產物 流通·加工

주요 거점지역에 木材集荷場 등 產地流通施設을 2001년까지 123개소를 목표로 '94년까지 51개소를 설치하였고, '95년에 13개소를 설치중에 있으며, 국산재 이용촉진을 위해 목재의 規格標準化를 추진하고 있으며 國產材를 이용하여 가공하는 업체가 장비, 노후시설 등을 교체할 경우 지원해 주고 있다.

(3) 林業 技術開發

林業의 産業化를 위한 기술개발

항암제 텍솔은 特許登録하여 特許廳에서 11월중 公賣 예정이며 톱밥을 이용한 썩는 스티로폴 및 플라스틱 제조법등은 특허 출원하였으며 개발된 기술은 産業化를 추진하기 위하여 침엽수재의 표면강화기술개발 등 6건은 기술을 讓許하였고, 합판 제조기술등 14건은 技術指導를 통한 기술이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現場 實用化 技術開發을 추진하고 있다.

山林環境 및 生物工學研究 촉진

山林環境 보전 차원의 연구를 위하여 대기오염, 산성우등 새로운 山林被害 확산 저지기술 및 산림 微生物에 의한 환경정화 기술개발 등 산림 공익 기능유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生物工學技法에 의한 저항성 품종 육성 보급 및 新物質 생산등을 추진하고 있다.

(4) 國有林 경영 혁신

木材 生産基地化 및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國有林率을 '94년의 21%에서 2000년에는 30%까지 제고시키는 등 국유림 확대, 집단화를 추진하고, 영림관서 조직개편, 관리소장 권한강화 등 責任經營制度를 도입하고, 주요 산별 종합계획 수립, 산림경영 시범단지 조성등 단지별 집중투자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5) 私有用 經營 활성화

독립가, 임업후계자 등 專門林業人을 2004년까지 860명 양성하고 임업 기계 훈련원 기능강화, 임업전문학교 설립 추진으로 임업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임업진흥기금을 설치하는 林業振興促進法 制定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 보전임지 전용허가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 하였다.

(6) 海外 造林

2040년까지 海外 造林地 700천ha 확보를 목표로 '95년까지 호주, 베트남 등에 조림지 92천ha를 확보하였으며 투자대상국과의 林業協定締結, 자금지원 등 進出業體에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7) 林産物 輸出入

밤, 송이, 표고 등 輸出林産物에 대하여는 收買資金을 융자 지원하고 ('95 : 287억원)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및 시설에 대한 지원('95 : 273억원) 을 실시 하는등 輸出振興對策을 적극 추진하고, 밤, 잣 등 최소시장접근물 량은 국내산 집중출하기를 피하여 반입하고 표고등 輸入急増 品目에 대해 서는 調整關稅 부과 및 原産地表示를 강화하는 등 국내산 보호를 위한 수 입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VI. 農漁村 生活環境 改善 및 福祉增進 對策

1. 目標 및 方向

農政의 궁극적인 목적은 農林漁業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農漁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현재도 농업기반이 확고하여 소득수준이 도시민 못지않은 일부 젊고 유능한 농업인 등이 이농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는 소득이외의 생활여건 등이 도시에 뒤떨어 지는데 그 이유가 있다.

정부는 농어촌 生活與件과 농업인들의 福祉水準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農漁村發展對策에 포함시켜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즉, 농어촌지역의 주택, 도로, 상·하수도 등 生活環境,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는 한편 교육, 의료, 연금제도 등을 농어업인 위주로 대폭 개편함으로써 도·농간의 발전격차를 해소시켜 활력있는 福祉農漁村을 건설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94년도에 제정된 農漁村整備法을 기본으로 하여 농수산업의 생산기반과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休養資源 및 限界農地등을 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農漁民年金制度를 새로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학생의 大學特例入學制度를 수립하여 '96년도 대학입시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의료보험제도를 개설하는등 의료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2. 다양한 所得源 개발

가. 農工團地 造成으로 농어촌 지역의 고용확대 도모

農工團地를 조성하여 농어촌지역의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農工團地開發施策 統合指針을 '94. 9월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95. 8월말 현재까지 270개소(12,104천평)를 지정, 운영 또는 조성중에 있다.

나. 농어촌 特産團地 조성으로 소득증대에 기여

농어촌 地域 賦存資源을 활용한 상품성있는 地域特産品의 생산단지를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94년까지 1,367억원을 지원하여 569개소를 조성하였으며, '95년도에는 129억원을 지원하여 72개소 신규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다. 농어촌 休養資源 개발

농어촌 觀光 賦存資源을 활용·개발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觀光農園과 休養團地, 民泊마을 등을 개발·육성할 계획으로 '94년까지 617억원을 지원 329개소를 조성하였으며 '95년에는 236억원을 지원하여 94개소 신규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라. 限界農地 개발 추진

대형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限界農地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다목적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한 基礎資料 확보를 위해 '92년부터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의 資源調査를 실시하고 있으며, '94. 12 農漁村整備法을 제정, '95. 7 시행됨에 따라 限界農地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3. 농어촌 基礎 生活與件 개선

가. 現代의 生活環境을 갖춘 文化마을 조성

面 지역의 중심마을에 마을기반시설, 주택신축, 복지 문화 및 체육시설, 환경보전 시설등을 갖추어 所得과 生活環境이 조화된 未來指向的인 文化마을을 조성해 나가면서 생산기반, 유통, 가공시설 사업과도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다. '91년부터 '94년까지 32개 지구를 착수하였으며 '95년에는 19개 지구를 신규착수하여 1,754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

나. 老後·不良住宅 개량을 위해 10년간 5조 4,000억원 지원

노후되고 불량한 農漁村住宅을 대상으로 부엌, 욕실등을 개량하여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95부터 2004년까지 매년 5만호씩 50만호를 대상으로 총 5조 4,000억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農漁村住宅改良事業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등을 통하여 住宅新築은 호당 1,600~2,000만원이내, 년리 5.0~5.5%,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있고, 住宅改良은 호당 210만원, 년리 3%, 3년거치 7년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95년에는 주택신축에 3만여호, 주택개량에 2만여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 農漁村道路의 지속적인 확대

낙후된 농어촌의 도로를 대폭 확충하여 농수산물의 生産·流通費用을 절감하고 交通便利를 높이기 위하여 농특세 예산을 대폭 지원하여 농어촌 도로 包裝率을 '95년 현재 25%에서 2004년에는 51%까지 높여나갈 계획으로 '95년부터 '98년까지 1단계로 1조 7,600억원을 들여 6,850km, '99년부터 2004년까지 2조 5,800억원을 들여 10,000km를 확·포장 예정이다.

〈농특세에 의한 생활여건 개선분야 사업내용〉

(단위 : 억원)

사업명	소관부처	총 소요액	'94추경	'95	'96~ 2004	재원조달	비고
○ 농 어 촌 도 로	내무부	12,000	650	1,200	10,150	○ 지방양여금 전출 지원	
○ 농 어 촌 주 택	”	8,000	400	800	6,800	○ 국민주택기금 전출 지원	
○ 농 어 촌 생활용수		12,000	400	1,200	10,400		
- 암 반 지 하 수	농 립 수 산 부		130	800		- 농 특 회 계 및 지 방 교 부 세	
- 지 방 상 수 도	환 경 부	12,000	270	400	10,400	- 농 특 세 관 리 특 별 회 계	
○ 농 어 촌 하 수 처 리 사 업		7,000	-	800	6,200		
- 마 을 단 위 하 수 처 리 시 설	내 무 부		-	450		- 지 방 양 여 금 전 출 지 원	
- 면 단 위 하 수 처 리 시 설	환 경 부	5,000	-	150	4,400	- ”	
- 오 염 소 하 천 정 비	내 무 부	2,000	-	200	1,800	○ 지 방 양 여 금 전출 지 원	
○ 농 어 촌 폐 기 물 처 리 지 원	환 경 부	2,040	-	225	1,815	○ 농 특 세 관 리 특 별 회 계	
계		41,040	1,450	4,225	35,365		

라. 농어촌에도 깨끗한 生活用水를 확대·공급

농어촌 生活用水改善事業을 암반지하수개발과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우물 및 하천수를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마을등을 대상으로 국고 50%, 지방교부금 50%로 岩盤管井을 개발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800억원을 들여 999개 지구를 시행하였다.

또한 環境部에서는 농특세를 재원으로 地方上水道 事業 추진과 관련하여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면지역에 상수도를 설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촌의 生活下水를 적절히 처리하여 쾌적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마을단위 하수處理施設을 '95년도에는 241마을에 시행하였으며 環境부에서는 면단위 하수處理施設 정비에 '95년에 150억원을 투입하였다.

마. 汚染된 小河川을 정비하고 廢棄物 처리를 지원

농어촌의 環境을 보전하고 上水源등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내무부에서는 오염 小河川 整備事業을 '95년도 200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매년 200억씩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環境부에서는 농특세를 재원으로 2004년까지 2,040억원을 들여 시·군당 1개소씩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각종 廢棄物處理場을 설치할 계획이다.

4. 농어촌 教育興件의 획기적 개선

가. 농어촌학생 大學入學 기회 확대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을 '96 大入부터 시행

教育機會의 불평등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 學生들의 教育기회를 확대하고, WTO 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촌 特別支援對策의 일환으로

농어촌학생에 대한 特別銓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94년 農漁村發展委員會의 건의를 수용하고 제3차 農政改革推進會議('95. 2. 15)에서 大統領의 “획기적인 農漁村教育活性化 方案 강구” 지시에 따라 '95. 3. 30 '96학년도 大學入試 기본계획에 동 特別銓衡 제도를 포함하여 발표하였으며, '95. 6. 17 教育法 施行令과 大學學生定員令을 개정하여 '96학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256개 大學에서 시행, 9,290명 혜택 예상

特別銓衡 對象者의 자격기준은 읍·면에 소재한 高等學校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在學期間中 본인 및 부모가 모두 읍·면에 거주한 자로 하였다. 選拔方法은 각 대학의 장이 학생 본인의 능력과 자질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적용준거를 정하여 시행하고, 入學定員은 대학학생 정원령에 의한 입학정원의외로 선발하되 학년별 총 학생수는 당해학년 입학정원의 2%, 학과별 총 학생수는 당해학과 정원의 10%내에서 선발하게 된다. '96학년도에는 전국 287개 대학중 31개 대학을 제외한 256개 대학에서 실시되어 9,29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 시행결과 등을 보아 特別銓衡制가 더욱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나. 農業人等 자녀 教育費 負擔 輕減

○ 公立學校 수업료, 入學金 면제범위 확대

농어촌 학부모들의 教育費 부담 경감을 위하여 '94. 8월 教育部令인 『학교수업료 및 入學金에 관한 規則』을 改正, 公布하여 읍·면, 도서·벽지 소재 공립의 유치원 및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범위를 15%에서 3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영세농어가 자녀 학자금 지원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농어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부모가 面 지역에 거주하고 耕地 소유규모 1ha 미만의 농가와 이에 준하는 경종 농어의 자녀중 전국 實業系 고등학생 및 實業系 列 학력인정학교 학생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지원 사업을 '89. 4. 28 農漁村發展綜合對策 실천계획에 의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95년도에는 92천명을 대상으로 43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행 실업계고교생 지원을 인문계까지 확대지원하는 문제는 政府 財政上, 그리고 都市地域 근로자 자녀와의 형평성 문제상 어려움이 있으나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간접적인 所得 支援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自營農科生 給食費 지원

핵심 농업인등 後繼 세대 육성, 自營農科生의 기숙사 생활을 통한 협동의식 및 영농의욕 고취, 農業人 등의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85. 2. 21 지원계획을 확정, '86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1,099명에게 10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 새마을 獎學金 지원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하여 농림수산부 훈령 제737호에 의해 새마을 獎學基金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農業系高校 재학생중 自營農科生 전원과 一般農科生 중 졸업후 영농정책을 희망하는 모범적인 학생에게 육성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2,500명에게 4억원(1인당 1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95년도 농업인 등의 자녀교육 지원계획〉

구	분	실업계고교생	새마을장학기금	금 식 비
인	원	92천명	2,500명	1,099명
금	액	433억원	4억	107백만원

다. 농어촌출신 大學生 學資金 용자

기존 대학생 학자금 용자사업과 병행하여 '94년부터 2004년까지 農特稅(2,10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어촌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학기당 100만원 이내에서 無利子로 용자해 주고 있다.

용자금의 償還은 용자받은 기간의 2배기간 내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등상환하도록 하고, 용자받는 자가 災害, 疾病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償還猶豫 또는 免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95년에는 22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 등의 관심과 호응도 높아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라. 농어촌 출신 학생 寄宿舍 건립

농어촌출신 都市 遊學生 숙식비 절감, 면학 및 주거환경개선과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농특세를 재원으로 地方 도시지역에 농어촌 출신 청소년을 위한 기숙사를 '95년부터 2000년까지 9개를 건립할 계획이다.

建立規模는 연평균 2,000평 규모로 3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관, 편의시설(도서실, 식당 등), 체육시설(체력단련실, 농구장 등)도 마련하여 농어촌출신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도모할 계획이다.

'95년도에는 충남 유성과 경남 창원 두 곳을 선정하여 건립중에 있으며 '96년에 기존 두 곳과 새롭게 두곳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마. 농어촌지역 公共圖書館 건립 운영

농어촌 주민의 문화이용공간 확충 및 건전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95년부터 2004년까지 농특세 940억원을 투자하여 군·읍·지역에 60관, 면지역에 40관 등 총 100관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신규건립 도서관과 기 건립 도서관 간에 차등적으로 圖書購入을 지원할 계획이다.

'95년 현재 9개 도서관에 각 10억씩 90억원을 지원하고 도서 구입비로 154관에 10억원을 지원하였다.

5. 농어민 年金制 실시

가. 農業人등의 老後保障을 위한 제도마련

농어촌 인구의 老齡化 현상의 가속화로 농업인 등의 노후 生計保障과 WTO체제 출범이후 시급해진 농어업구조개선을 위해 노령농업인 등의 隱退保障제도로써 農漁民年金制度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第7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기간내에 國民年金을 農漁村地域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94. 6월 농어민연금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95. 1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95. 7. 1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나. 농어업인 1,262천명 가입

'95년 9월말 현재 농업인등 1,262천명, 비농업인 417천명 등 1,934천명이 가입하여 農漁民年金制에 대한 농업인등 호응이 높게 나타났다.

農漁民 年金制度는 保險料 부과, 급여체계 등 적용방식은 현행 國民年金

體系를 유지하되 농업인 등 자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조정하여 시행 당시 60세이상 65세 미만의 농업인등에게도 가입기회를 부여하고, 농업인 등에 한하여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인 2,2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保險料率의 경우 '88년 국민연금 시행초기의 보험료율인 3%를 적용하고 5년후에는 6%, 10년후에는 9%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 保險料 납부 便宜制度 마련

농어촌의 소득이 수확기 등 재배작물의 성격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인 신청에 따라 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분기별 납부제도』, 12개월분 보험료 범위내에서 가입자 본인이 희망하는 개월분만큼 선납하는 경우 일정할인율(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공제하여 주는 『先納割引制度』, 가입자가 군입대, 재난, 사고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보시켜 주는 『納付例外制度』등 保險料 納付便宜制度를 마련하였다.

라. 特例 老齡年金制의 대상을 농업인등에 한하여 65세까지 확대

급여관리는 현행 國民年金의 老齡年金, 障害年金, 遺族年金을 그대로 적용하고, 가입자 사망당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유족에게 위로금 형태의 死亡一時金を 지급하는 『死亡一時金制度』를 신설하고 '95. 7월 시행당시 45세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대상인 특례노령연금제를 농업인등에게는 예외적으로 65세까지 확대하여 특례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6. 농어촌 醫療여건 개선

가.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1)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험료 부담경감

소득의 형태, 소득과악율, 의료이용율이 유사한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시·군별로 보험조합을 설립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현 제도는 조합간에 人口構成 등 위험요인이 달라 조합간 財政力 격차 발생, 일부 소규모 조합의 경우 위험분산 기능이나 규모의 경제측면에서 미흡하여 管理運營費 비중이 높고, 퇴직,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資格이 變動될 경우 組合間 資格管理가 연계되지 않아 자격 누락자는 二重資格者가 생기는 문제등이 있다.

현행 관리운영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農漁村組合의 財政 안정화 및 保險料 부담경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95년 농어촌조합은 國庫 差等支援 343억원, 老人醫療費 333억원, 高額診療費 347억원등 총 1,023억원의 추가지원 효과가 발생하여 농어촌조합당 7억원, 1인당 18,000원의 지원효과가 있게 된다.

(2) 國庫差等支援 比率의 연차적 확대

도시와 농어촌 지역조합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國庫支援 방식을 시·군별 所得과표와 老人扶養指數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국고차등지원제도를 실시하여 '94년 국고 지원 총액의 3.3%에서 '95년 10%까지 확대하고, '96년에는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3) 老人 醫療費 共同負擔事業 실시

농어촌의료보험조합의 재정을 가장 어렵게 하는 65세 이상 老人의 入院給與費 전액을 직장조합, 공·교조합 등 모든 보험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부담 사업을 실시한다.

(4)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 확대실시

현행 건당 90만원 이상의 高額診療費를 모든 組合이 공동부담 하는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老人 및 高額醫療費 공동부담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조합의 負擔率 上限을 보험료 수입의 20%에서 25%로 인상할 계획이다.

(5) 농업인 등 健康診斷 실시 및 급여기간 연장

농업인등 醫療費 부담경감 및 保險給與 확대를 목적으로 농어촌지역 40세이상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95년부터 당뇨, 고혈압, 간기능장애 등 성인병에 대해서 격년제로 健康診斷을 실시하는 한편 保險給與期間을 현행 180일에는 210일로 연장하고 연차적으로 30일씩 연장할 계획이며, 건강진단 및 보험급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財源은 조합간 財政共同事業으로 조달 할 계획이다.

나. 농어촌 醫療서비스 개선

(1) 종합적인 農漁村 醫療서비스 質 향상

농어촌 老齡人口의 증가 등으로 農漁村 수진율이 증가함으로써 농어촌 醫療需要는 지속적으로 증대하지만 의료자원의 도시지역 편재로 良質의 의료서비스 공급곤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종합적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9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 '98년까지 4,785억원 투자

'94년부터 農漁村特別稅를 재원으로 하여 농어촌 郡單位 保健所(保健醫療院 포함) 및 산하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등의 진료기능 보강을 위한 診療施設 및 裝備 확충 지원에 1,415억원을 투자하고 농어촌지역 民間醫療機關(지방공사 포함)에 대한 3,370억원의 金融支援을 통해 의료서비스 개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추진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94추경	'95예산	'96	'97	'98
계	4,785	200	801	1,523	1,491	770
○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	1,415	200	401	423	391	—
○ 민간의료기관 금융지원	3,370	—	400	1,100	1,100	770

(3) 遠隔診療 시스템 구축

都·農 統合形 농어촌지역에 건립·운영되고 있는 일반병원에 의료인력과 特別 金融支援을 통하여 中心 病院으로 육성하여 大學病院과의 初高速 通信網을 이용한 遠隔診療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간오지·벽지 등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곤란한 지역에는 보건진료원의 진료기능 강화 등을 통해 『訪問保健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Ⅶ. 對策推進을 위한 財源確保 및 投資計劃

1. 目標 및 方向

「農漁村發展對策 및 農政改革推進 方案」을 수립하면서 이 대책을 확실히 집행한다는 政府의 확고한 의지의 하나로서 구체적인 財源을 마련하였다. 우선 지난 '91년 수립한 「農漁村構造改善對策」을 뒷받침 하기위한 42조원의 投·融資 計劃을 당초 2001년까지에서 3년 앞당겨 '98년까지 조기집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와는 별도로 農漁村特別稅를 신설하여 '95~2004년 간 10년동안 15조원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95~'98년동안 中央政府支援 규모가 총 25조원에 이르는 42조 투·융자 계획은 構造改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集中投資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성금적 성격의 農特稅 재원은 競爭力 強化 대책 뿐만 아니라 기초 생활여건의 정비, 기본적인 농어업인 복지증진 시책에도 균형있게 投資함으로써 農業人등이 政府支援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99년이후에도 적정수준의 農漁村 投資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기본원칙아래 효율적인 中長期 投融資 計劃을 수립해 나감으로써 농업인들이 政府의 對策을 신뢰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2. 42조 投·融資計劃

가. 42조원 投融資計劃의 조기집행

WTO 체제출범 등 개방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農漁村構造改善을 위한 당초 42조원 投融資計劃('92~2001)을 '98년까지 3년 앞당겨 집행하여 人力育成, 機械化 및 施設現代化, 生産基盤造成, 流通改善 등 競爭力 제고를 위한 핵심사업에 중점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42조원 投融資 計劃：中央 투융자 기준〉

	'92~'95	'96~'98	'92~'98
－ 경쟁력 강화	13조 7,278억원	18조 1,669억원	31조 8,947억원
－ 농어촌활력증대	1조 3,836	2조 1,194	3조 5,030
계	15조 1,114억원	20조 2,863억원	35조 3,977억원

나. 42兆원 投融資 計劃 推進을 위한 예산 뒷받침

農漁村發展對策을 뒷받침할 42조원 구조개선사업 조기 投融資計劃을 '95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94년보다 19.5% 증가한 4조 3천억원을 확보 하였다.

(단위 : 억원)

사 업 별	'92~'93 실적	'94예산	'95예산	증감	
					%
○ 인력육성 및 기술개발	6,015	4,450	5,588	1,138	25.6
○ 생산기반확충, 영농 규모화 및 기계화	27,512	15,570	18,253	2,683	17.2
○ 유통개선및시설현대화	5,794	3,969	5,599	1,630	41.1
○ 축 산 구 조 개 선	9,904	6,935	7,214	279	4.0
○ 어 업 구 조 개 선	4,410	2,843	3,162	319	10.1
○ 임 업 구 조 개 선	4,396	2,636	2,848	212	8.0
○ 소득원개발및생활환경개선	4,066	4,808	4,962	154	3.2
국 고 투 융 자	55,981	35,912	42,626	6,714	18.7

다. '96~'98 投融資 方向

향후 3개년('96~'98) 투융자 계획은 WTO체제에 대응한 農漁村發展對策의 조속한 具體化를 위하여 競爭力提高 核心事業에 重點支援하여 '95년 국고투융자 기준으로 매년 연평균 20% 수준을 증액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단위 : 억원)

사 업 명	합 계 ('92~'98)	'92~'94	'95예산	'96~'98 (계획)	주 요 사 업 내 용
1. 인 력 육 성	23,576	6,827	3,993	12,756	• 후계자, 전업농15만호육성
2. 생 산 기 반	86,063	23,438	11,414	51,211	• 경지정리, 용수개발,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등
3. 기 계 화	30,720	9,729	4,030	16,961	•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일반용자, 농기계이용조직
4. 영 농 규 모 화	25,408	9,915	2,809	12,684	• 농지매매, 임대차, 교환·분합
5. 축산구조개선	55,053	16,853	7,214	30,986	• 축종별경쟁력강화, 축산단지, 가축계열화, 축산분뇨처리
6. 기 술 개 발	12,226	3,624	1,595	7,007	• 연구개발, 기술보급, 정보화
7. 유 통 개 선	22,477	5,976	3,044	13,457	• 도매시장, 산지가공, 산지유통시설
8. 시 설 현 대 화	17,699	3,967	2,555	11,177	• 과수, 채소, 화훼 생산 및 유통 지원, 잠업특작 등
9. 어업구조개선	24,225	7,253	3,162	13,810	• 수산자원조성, 어항건설
10. 임업구조개선	21,500	7,032	2,848	11,620	• 육림, 조림, 임도 등
11. 소 득 원 개 발	24,682	6,654	3,518	14,510	• 농공단지, 관광휴양자원
12. 생 활 환 경 개 선	10,348	2,220	1,444	6,684	• 주거환경, 정주권개발 등
국 고 투 융 자	326,382	91,893	42,626	191,863	
축 산 발 전 기 금	27,595	11,595	5,000	11,000	
합 계	353,977	103,488	47,626	202,863	

* '96이후의 분야별, 세부사업별 투자예산과 연차별 자원조달규모는 매년 예산편성시 조정·확정

라. 42조 投融資計劃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노력

앞으로도 WTO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農漁村發展對策을 조속히 구체화 하기 위하여 構造改善을 위한 42조원의 투자재원이 쌀 등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사업에 중점 지원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70여개의 구조개선사업에 대해 사업별 신청방식, 지원내용과 사업 실시 등 전반에 걸쳐 農林水産事業 統合實施要領의 보완을 통해 개별사업별 타당성을 검토하여 새로운 농정방향과 일치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예산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42조원 구조개선사업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細部推進狀況을 점검·평가하여 계획보다 집행실적이 미진한 사업이 있어 농어촌구조개선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사업의 단가를 인상하거나 국비·지방비 등 財源 負擔率을 조정하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어촌구조개선 계획지표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들어 耕地整理事業의 경우 豫算 事業單價가 현실 사업단가 보다 낮고, 지방비부담이 예상보다 증가함으로써 당초계획보다 집행실적이 저조한 실정인바, 앞으로 이와같이 집행실적이 미진한 사업들을 점검하여 당초 사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또한, 42조 投融資 및 農特稅 財源을 기준으로 수립된 시·군단위 『農漁村發展計劃』을 확정하여 지역특성과 농어촌현장이 연계된 사업집행기반을 구축하고, 『市·郡 農漁村發展計劃』에 입각하여 매년 예산을 신청하고 편성하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계획과 예산요구 및 사업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3. 15조 農特稅 投資計劃

가. 農漁村特別稅 15조원으로 경쟁력 강화사업에 집중투자

국민성금적 성격의 農漁村特別稅 15조원을 新設하여 競爭力강화에 중점 지원하되 生活與件 개선과 福祉增進에도 균형있게 배분하고 農漁村特別稅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農特稅管理特別會計』를 신설하였다.

농어업 競爭力強化 분야에는 전체 재원의 60.5%인 9조 775억원을 배분하여 大區劃耕地再整理, 生産과 販賣를 직접 연결하는 物流센터·簡易集荷場·綜合包裝센터 건설, 중·소농 高品質 농수산물 생산지원, 漁港施設 확충, 林道 건설과 농수산 信用保證基金 출연 등 競爭力提高를 위해 필요하나 그동안 지원이 미흡했던 사업과 농업인들의 宿願事業, 流通改革 차원에서 시급히 지원되어야 할 사업을 대상으로 집중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 生活與件改善 분야에는 전체 재원의 27.4%인 4조 1,040억원을 배분하여 농어촌 道路, 住宅, 生活用水 등 基礎 生活施設 확충을 위한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집중지원 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길문제, 집문제, 물문제를 대부분 해결해 나갈 것이다.

농어업인 福祉增進 분야에는 農特稅 재원의 12.1%인 1조 8,185억원을 배분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農漁民年金制 실시, 의료·교육·문화·교통 등 生活 基本需要를 충족시키는 사업, 재촌 농어민의 고용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한 職業訓練 事業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農漁村特別稅 投融資計劃〉

	'94~'95	'96~2004	'94~2004
－ 농어업競爭力強化	1조 943억원	7조 9,832억원	9조 775억원
－ 농어촌生活環境改善	5,675	3조 5,365	4조 1,040
－ 농어업인 福祉增進	2,294	1조 5,891	1조 8,185
계	1조 8,912억원	13조 1,088억원	15조

나. '95年度 投資計劃

'94년도 추경예산으로 3,480억원을 확보하여 支援效果가 크고 年내 착수가 용이한 물류센터건설, 농어촌도로 확충, 의료서비스등 12개 사업을 우선적으로 選定, 추진하였다.

'95년도에는 1조 5,432억원의 豫算을 확보하여 이중 60.1%는 경지재정리, 물류센터 건설 등 競爭力 強化 部門에 投資하고, 39.9%는 도로·주택 등 농어촌 生活與件 개선과 연금·학자금 지원등 농어업인 福祉增進에 투자하고 있다.

(단위 : 억원)

사 업 별	'94	'95	총소요
〈농 어 업 경 쟁 력 강 화〉	1,670	9,273	90,775
○ 대 구 획 경 지 재 정 리	320	2,931	
○ 물류센터건설등유통개선	700	1,870	
○ 첨단기술및현장애로기술개발	150	676	
○ 어 항 · 임 도 건 설 등 기 타	500	3,796	
〈농 어 촌 생 활 여 건 개 선〉	1,450	4,225	41,040
○ 도 로 확 충	650	1,200	
○ 용 수 개 발	400	1,200	
○ 주 택 개 량 등 기 타	400	1,825	
〈농 어 업 인 복 지 증 진〉	360	1,934	18,185
○ 연금제실시및의료서비스개선	210	1,256	
○ 대 학생 학 자금 융 자 등 기 타	150	678	
계(총 21개 사업)	3,480	15,432	150,000

農漁村投融資計劃總括('95~'98)

(42조 및 농특세 사업)

(단위 : 억원)

사 업 명	'95			'96~'98		
	소계	42조	농특세	소계	42조	농특세
합 계	63,058	47,626	15,432	255,035	202,863	52,172
○ 생 산 기 반 정 비	14,576	11,414	2,931	66,680	51,211	15,669
- 경 지 정 리	7,060	4,129	2,931	28,896	13,227	15,669
- 용 수 개 발	2,256	2,256	-	9,812	9,812	-
○ 농 업 기 계 화	4,030	4,030	-	16,961	16,961	-
○ 시 설 현 대 화	3,255	2,555	700	12,277	11,177	1,100
- 과 수 산 업 육 성	759	759	-	3,465	3,465	-
- 체 소 · 화 훼 산 업 육 성	2,001	1,501	500	6,049	5,549	500
- 중 소 농 고품 질 농 업 생 산 지 원	200	-	200	600	-	600
○ 영 농 규 모 화	2,809	2,809	-	12,684	12,684	-
○ 기 술 개 발	2,271	1,595	676	9,035	7,007	2,028
- 현 장 애 로 기 술 개 발 등	1,131	831	300	4,852	3,952	900
- 첨 단 기 술	376	-	376	1,128	-	1,128
○ 정 예 인 육 성	4,355	3,993	362	13,842	12,756	1,086
○ 축 산 업 구 조 개 선	7,214	7,214	-	30,986	30,986	-
○ 유 통 계 선	4,414	3,044	1,370	17,567	13,457	4,110
- 도 매 시 장 등	1,050	630	420	2,956	1,696	1,260
- 물 류 · 포 장 센 타	950	-	950	2,850	-	2,850
○ 어 업 구 조 개 선	4,930	3,162	1,768	19,114	13,810	5,304
- 어 항 건 설	1,505	306	1,199	5,645	2,048	3,597
○ 임 업 구 조 개 선	3,514	2,848	666	13,618	11,620	1,998
- 임 도 시 설	983	317	666	2,950	952	1,998
○ 소 득 원 개 발	3,518	3,518	-	14,510	14,510	-
○ 생 활 여 건 및 복 지	8,403	1,444	6,959	27,561	6,684	20,877

※ '95~'98간 총투융자액 : 31조 8,093억원(42조계획 25조 489억원, 농특세 6조 7,604억원)

《農漁村特別稅 投融資計劃》

(단위 : 억 원)

사 업 명	총소요	'94추경	'95예산			'96~2004
			계	국 고	지방비	
합 계	150,000	3,480	15,432	11,019	4,413	131,088
I. 농 업 경 쟁 력 강 화	90,775 (60.5%)	1,670 (48.0)	9,273 (60.1)	7,659	1,614	79,832 (60.9)
① 경 지 재 정 리	43,000	320	2,930	2,350	581	39,749
② 유 통 개 선	14,550	700	1,870	1,606	264	11,980
③ 중 소 농 고품 질 농 업 생 산 지 원	2,000	—	200	150	50	1,800
④ 농 신 보 기 금 출 연	7,000	200	800	800	—	6,000
⑤ 농 어 업 기 술 개 발	5,040	150	676	676	—	4,214
⑥ 기 술 전 문 대 학 육 성	2,500	—	362	362	—	2,138
⑦ 어 항 건 설	7,800	300	1,199	1,012	187	6,301
⑧ 어 촌 중 합 개 발	5,035	—	499	263	236	4,536
⑨ 약 식 어 장 개 발	700	—	70	70	—	630
⑩ 임 도 건 설	3,150	—	666	370	296	2,484
II. 농 어 촌 생 활 여 건 개 선	41,040 (27.4%)	1,450 (41.7)	4,225 (27.4)	1,625	2,600	35,365 (27.0)
① 농 어 촌 도 로 정 비	12,000	650	1,200	—	1,200	10,150
② 농 어 촌 하 수 도 정 비	5,000	—	600	—	600	4,400
③ 외 영 소 하 천 정 비	2,000	—	200	—	200	1,800
④ 농 어 촌 주 택 개 량	8,000	400	800	800	—	6,800
⑤ 농 어 촌 폐 기 물 처 리	2,040	—	225	225	—	1,815
⑥ 농 어 촌 생 활 용 수 개 발	12,000	400	1,200	600	600	10,400
III. 농 어 업 인 복 지 증 진	18,185 (12.1%)	360 (10.3)	1,934 (12.5)	1,735	199	15,891 (12.1)
① 농 어 민 연 금 제	8,000	10	455	455	—	7,535
② 농 어 촌 의 료 서 비 스	4,785	200	801	667	14	3,784
③ 대 학 생 학 자 금 용 자	2,100	100	350	350	—	1,650
④ 유 학 생 기 숙 사 건 립	360	—	40	20	2—	320
⑤ 공 공 도 서 관 건 립	940	—	100	55	45	840
⑥ 오 지 및 낙 도 교 통 지 원	800	50	96	96	—	654
⑦ 농 어 업 인 직 업 훈 련	1,200	—	92	92	—	1,108

※ '96이후의 연차별, 세부사업별 투자예산은 매년 예산편성시 조정·확정

〈 부 록 〉

'95 예산 현황

1. 농림수산부문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94예산	'95예산	증감	
					%
기 능 별	1. 순사업비	34,127	47,134	13,007	38.1
	2. 부담경감 및 채무 상환등	11,687	16,185	4,498	38.5
	3. 양곡지원	13,886	19,119	5,233	37.7
	○ 수매지원	8,299	6,972	△1,327	△16.0
	○ 양곡증권기금	5,587	12,147	6,560	117.4
계		59,700	82,438	22,738	38.1
(농림수산부)		(53,244)	(70,770)	(17,526)	(32.9)
재 원 별	○ 일반회계	19,982	25,985	6,003	30.0
	(농림수산부)	(14,980)	(20,578)	(5,598)	(37.4)
	○ 농특회계	28,417	45,285	16,868	59.4
	(농림수산부)	(28,155)	(40,466)	(12,311)	(43.7)
	○ 재특회계	11,301	11,168	△133	△1.2
(농림수산부)	(10,109)	(9,726)	(△383)	(△3.8)	
양곡관리특별회계		19,024	17,796	△1,228	△6.5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1,138	1,186	48	4.2

2. 42조원 투융자 계획

○ '95년도 정부예산에서 4조 3천억원을 확보함으로써 42조 조기집행계획을 뒷받침

－ 42조예산(국고 투융자) : ('94)35,912억원→('95)42,626(18.7%증)

(단위 : 억원)

사 업 명	'92~'93실적			'94예산	'95예산	'95/'94 (%)
	'92	'93	소계			
1. 인 력 육 성	1,916	1,920	3,836	3,005	3,993	32.9
2. 생 산 기 반	5,762	7,880	13,642	9,796	11,414	16.5
3. 기 계 화	3,052	3,293	6,345	3,384	4,030	19.1
4. 영 농 규 모 화	4,137	3,388	7,525	2,390	2,809	17.5
5. 축산구조개선	4,066	5,838	9,904	6,935	7,214	4.0
6. 기 술 개 발	1,027	1,152	2,179	1,445	1,595	10.4
7. 유 통 개 선	1,863	1,867	3,730	2,246	3,044	35.5
8. 시 설 현 대 화	1,018	1,226	2,244	1,723	2,555	48.3
9. 어업구조개선	2,001	2,409	4,410	2,843	3,162	11.2
10. 임업구조개선	1,759	2,637	4,396	2,636	2,848	8.0
11. 소 득 원 개 발	1,658	1,499	3,157	3,497	3,518	0.6
12. 생활환경개선	229	680	909	1,311	1,444	10.1
국 고 투 융 자	26,265	29,716	55,981	35,912	42,626	18.7
축 산 발 전 기 금	2,223	4,073	6,296	5,299	5,000	△5.6
계	28,488	33,789	62,277	41,211	47,626	15.6

3. 농특세 투자계획 및 '95예산

(단위 : 억원)

	총소요	'94추경	'95예산
I. 농어촌경쟁력강화	90,775	1,670	9,273
①대구획경지재정리	43,000	320	2,931
②물류센터건설 등 유통개선	14,550	700	1,870
③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	2,000	—	150
④농림수산첨단기술 및 현장애로기술개발 첨단기술개발(3,000억원), 농과대학시설장비(390억원) 현장애로기술개발(1,650억원)	5,040	150	676
⑤농림수산기술전문대학 및 자영농수산고교 지원 기술전문대(2개교 신설등), 임업기능훈련원 자영농수산고교(농고 10, 수고 3개교)	2,500	—	301
⑥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출연 신용보증기금 조성규모 1조원(2004년)으로 확대	7,000	200	800
⑦어항건설 국가어항(24개항) 및 지방어항(200개항) 조기완공	7,800	300	1,199
⑧양식어장 및 어촌종합개발 양식어장(700억원), 어촌종합개발(5,036억원)	5,735	—	569
⑨임도건설 7,000km(임도밀도 0.9m/ha→1.9m/ha)	3,150	—	666
II. 농어촌생활여건개선	41,040	1,450	4,225
①농어촌도로확충 도로포장률 : ('93년)25%→(2004년) 85%	12,000	650	1,200
②농어촌주택개량 불량·노후주택 25만호 개량	8,000	400	800
③농어촌용수개발 50만호 이상 자연수 의존마을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	12,000	400	1,200
④농어촌하수도 및 오염소하천 정비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5,000억원), 오염소하천 정비(2,000억원)	7,000	—	800
⑤농어촌폐기물처리 지원 군당 1개소(총 136개소)	2,040	—	225

(단위 : 억원)

	총소요	'94추경	'95예산
III. 농어업인복지증진	18,185	360	1,934
①농어민연금제 실시 연금각출료의 1/3(월 2,200원) 및 관리운영비 지원	8,000	10	455
②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군단위보건의료원 신설(25개소) 및 보건소·보건지소 시설장비 보강, 민간병원 시설장비 용자지원	4,785	200	801
③대학생학자금 용자 매년 1만명, 1인당 200만원 용자	2,100	100	350
④도시유학생 기숙사 건립 도별 1개소씩 총 9개소 건립	360	—	40
⑤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읍·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100개소) 및 자료구입 지원	940	—	100
⑥오지 및 낙도교통지원 벽지 적자버스노선지역 마을버스 구입지원 및 낙도 보조항로 노후여객선 대체	800	50	96
⑦농어업인직업훈련 매년 20천명 수준 직업훈련지원	1,200	—	92
합 계 (21개사업)	150,000	3,480	15,432

부록 2

농림수산사업 세부추진요령

내 용	주 체	시 기	주 요 내 용
1. 사업계획수 립 및 신청 요령공고 ※사업계획수 립안내	시장·군수	전전년 12 월 중 (20 일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청 및 읍·면사무소, 농촌지도소, 협동조합 및 마을단위 게시판게시, 반상회보 게재 ○ 읍·면장을 통해 마을단위까지 문서 통보 ○ 시·군, 읍·면, 농어촌지도소, 농산물검사소출장소, 협동조합,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지사를 사업안내기관으로 지정하여 연중 사업 안내·상담·지도
2. 사업신청	생산자단체 농업인등	전년1.31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장을 거쳐 시·군 총괄부서에 사업신청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규모 1천만원이상 사업에 한해 사업계획서 첨부 - 융자금액 1천만원 이상 사업에 한해 융자신청자료 첨부 ○ 농어업인후계자육성, 쌀전업농을 제외한 전업농육성,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지도소에 신청 ○ 농지매매·임대차·교환분합, 쌀전업농육성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에 신청 ○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지원되는 사업은 당해 협동조합에 신청

내 용	주 체	시 기	주 요 내 용
3. 시·군의 사업신청서심사 및 예산요구	시장·군수 (총괄부서 사업부서)	전년2.28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부서는 접수즉시 사업부서에 심사의뢰 ○ 사업부서는 농·어촌지도소 및 용자취급기관에 의뢰하여 사업검토의견 또는 신용조사의견을 받아 신청서를 심사, 우선순위를 정하여 총괄부서에 제출 ○ 총괄부서는 사업별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종합하여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사를 받은후 그 결과에 따라 2.28일까지 시·도에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를 하고 그 결과를 시·군 홍보지나 반사회보를 통해 공지
4. 시·도의 시·군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심사	시·도지사 (총괄부서, 사업부서)	전년3.31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부서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부서에 의뢰하여 심사 ○ 사업부서는 시·군별 사업량 및 소요예산과 이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총괄부서에 제출 ○ 총괄부서는 사업별 사업량 및 소요예산을 종합·조정하여 도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3.31까지 농림수산부 또는 청의 기획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시·도 홍보지등에 게재홍보

내 용	주 체	시 기	주 요 내 용
5. 중앙의 시·도별 사업 계획 및 예산 요구 심사	농림수산부, 청(기획예산 담당관)	전년 5.31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예산담당부서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부서에 심사 의뢰 ○ 사업부서의 심사결과를 참고, 사업별로 종합적으로 심사·조정하여 다음 년도예산요구서 제출
6. 예산가내시	농림수산부, 청(기획예산 담당관)	전년 10.15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 및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서로부터 시·도 및 시·군별 예산 및 기금지원 배분 계획안을 제출받음 - 10.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군별 사업별 예산지원계획 가내시
	시·도(총괄 부서)	전년 12.15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내시된 국고 및 시·도비 예산안과 시·군비 예산안에 맞추어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결정
7. 사업계획 및 지원 대상자 확정	농림수산부, 청(기획예산 담당관)	예산 확정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시·도 및 시·군별 사업별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
	시·도지사	전년 12.31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의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계획 및 시·도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

내 용	주 체	시 기	주 요 내 용
8. 농어민등의 사업추진 및 경영장부 비치	시장·군수 사업자(생산자단체, 농어민등)	당년 1.15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분된 시·군별 사업계획 및 예산배정계획에 의하여 자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지원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확정 ○ 지원대상자 확정결과를 시·군 홍보지, 반상회보등을 통해 공지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경영장부를 비치·기록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금전출납형태의 경영일지 작성 - 3,000만원이상 사업자는 수입·지출상황기록 및 경영성과를 포함한 경영장부비치 기록
9. 사업추진실태의 점검·평가	농림수산부장관, 3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위탁단체장	매년 1회 (필요시 수시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와 시장·군수, 시·도지사 및 위탁단체장은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평가하고 계통기관에 결과보고 ○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청장은 합동평가반을 구성하여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평가하여 포상 또는 예산지원의 증감조정 등 조치

農漁村發展對策推進 日誌

일 자	정 책 명	주 요 골 자	비 고
'94. 6.14	『農漁村發展對策 및 農政改革推進 方案』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 경쟁력 강화 10대 핵심시책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업농 15만호 육성 - 농업회사법인 제도도입 - 농지제도개혁 등 ○ 농어촌발전을 위한 8대 개혁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원사업 추진방식 개혁 - 농·수·축·임협 개편 - 농수산물 시장·유통 구조 개혁등 ○ 농어촌 생활·교육여건개선 및 후생복지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건의(1차건의 4.19, 2차건의 5.24)를 토대로 농정시책화 ○ 대통령주재 1차농정개혁추진회의에서 확정·발표 ○ '94. 9. 17 세부실천계획 수립 ○ '94. 11 농림어업 부문 WTO대응책자 발간
'94. 6	醫療保險制度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재정 국고지원분 차등 지원, 노인의료비 공동부담사업 도입실시, 고액진료비 공동부담 사업확대실시계획 수립, 농어민 건강진단실시 등 	
'94. 6	水産政策改革方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정화와 기르는어업육성 ○ 어업구조조정과 어업질서 확립 ○ 어촌종합개발과 어업기반 시설 확충 ○ 수산물유통개선과 가공산업 육성 	

일 자	정 책 명	주 요 골 자	비 고
'94. 7. 4	農特稅投資計劃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조 농특세 재원을 농어업 경쟁력강화에 중점지원하되, 생활여건개선, 농어민복지증진에 균형있게 배분 - 경쟁력 강화 : 9조775억원(66.5%) - 생활여건개선 : 4조1,040억원(47.4%) - 복지증진 : 1조8,185억원(12.1%) 	○ '94~2004년까지의 농특세 투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 협의회 구성
'94. 8. 1	汎國民가뭄對策委員會 발족	○ 중앙가뭄대책본부 발족(7.20)과 각계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가뭄대책위 발족	○ 위원장 : 총리 정부위원 11명, 민간위원 22명
'94. 8. 2	農漁村學生 學費負擔輕減(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조건 등 구체적 지원 방안 수립 - 10년간 2,100억원지원 	○ '94. 10월 추경예산 80억원 배정
'94. 8	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法制定및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특세 관리를 위한 농어촌 특별세관리특별회계 설치 ○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추진 	
'94. 8	農地制度改革方案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소유제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소유상한 확대, 소유규제완화 ○ 농업회사법인제도 도입 ○ 농지이용계획 및 농지이용 증진사업제도 도입 ○ 농지전용규제 완화 	○ 12.22, 농지법 제정으로 제도화

일 자	정 책 명	주 요 골 자	비 고
'94. 8	協同組合改革方案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경영에 농어업인참여 확대와 전문성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회장 자격의 조합원으로의 제한, 전문 경영인제도 도입 ○ 품목별 전문조합육성으로 수급조절, 유통개선 핵심 역할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조합연합회 설립 허용 ○ 기업적 경영도입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경제사업의 독립사업부제 운영 	○ 12.22 농·수·축·임협 개정을 조직과 기능개편 완료
'94. 9	農水産技術開發對策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애로기술개발 지원 확대 ○ 농어업분야의 첨단기술산업화 촉진 ○ 농수산대학의 지역특성화 지원 	
'94. 9	農水産物流通改革對策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조직육성으로 부가가치의 농어업인 환원 촉진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유통경로 다원화로 유통비용 절감 ○ 단기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매인 도매행위 허용 - 공공출자법인에 의한 시장·관리 운영의 일원화 등 도매시장 운영제도 개선 - 영농조합법인의 지역제한 폐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0 유통개혁기획단 발족 이후 전문가등의 의견수렴과 농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거쳐 확정 ○ 유통개혁대책추진 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개혁기획단 방문 : '94. 5.20 - 유통발전위원회구성 : 5.25 - 유통발전위원회활동 : 5.25~8. 9 - 유통개혁대책발표 : 9. 1

일 자	정 책 명	주 요 골 자	비 고
'94. 9. 7	地方農政改革推進方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 - 도매시장, 물류센터등 유통시설 확충 - 포전매매제도화, 포장규격화, 품질인증제, 원산지 표시 등 	
'94. 9. 7	地方農政改革推進方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발전대책 방향에 따라 각도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농정개혁추진 방안 제시 	○ 제2차 농정개혁추진회의에서 마련
'94.10	農漁村醫療서비스改善 5개년計劃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군단위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금융지원 계획 수립 (5년간 4,785억원) 	
'94.10	市場接近物量管理方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접근물량 수입창구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등 국영무역표시품목 : 유통공사, 축협등으로 수입창구 단일화 - 국영무역 미표시품목 : 돼지고기 등은 허가권 공매 제도를 통해 수입이익금 흡수, 농안기금등에 납입, 경쟁력강화에 재투자 	○ '94.12.31,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안법 등 8개관련 법률 개정으로 제도화
'94.11. 1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농안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매인의 도매행위 허용 ○ 포전매매 제도화 ○ 도매시장관리 공공법인 설치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안법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안법개정안공청회 : 9. 6 - 국회제출 : 9. 14 - 공포·시행 : 11. 1

일 자	정 책 명	주 요 골 자	비 고
'94.11	農林水産物 輸出 振興綜合對策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년을 수출농어업의 전 환점으로 하여 중장기 수 출목표 마련 ○ 안정적 수출농업기반 구축 ○ 해외시장개척, 홍보활동 강화 ○ 농업무역종합정보망구축 ○ 수출농업 지원체계 마련 	
'94.11	農漁村投融資計劃 確定 및 未來像展 望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조 투융자계획 - 당초계획('92~2001)보다 11조 수준 조기 투자 ○ 42조 조기투융자 및 농특 세투자에 따른 예상효과 전망 등 농어촌의 미래상 제시 	○ WTO체제출범 대응책자, 기본대책 등 5편 1천부 발간 병행조치
'94.12.14	農政執行方式改革 (농림수산부사업 통합 실시요령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5개 농림수산사업의 지 침통합 - 상향식 집행방식으로 개편 ○ 사업착수시기 2~3개월 앞당김 ○ 농어업인자율추진사업확대 	○ 통합실시요령책자 4편 8 천부 발간, 마을단위까지 배포
'94.12.16	農漁民年金實施에 관한 國民年金法 개정	○ 전국의 모든 농어업인과 군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자 를 대상으로 '95. 7월부터 농어민연금제도 마련	○ '95. 4. 1국민연금법 시행 령 개정으로 구체화

일 자	정 책 명	주 요 골 자	비 고
'94.12.31	農漁村整備法제정	○ 농어촌정비 종합계획수립 근거 마련 ○ 한계농지 이용·개발 ○ 농수산업 생산기반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 -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시 병행 실시	○ 12.31시장접근물량 관리방안 관련 8개법률 개정 - 12.31농축산물 시장 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고시
	山林法 개정	○ 보전임지를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구분 ○ 임산물가공업 등록제 폐지	
	畜産法 개정	○ 종축 수출입추천제를 신고제로 전환 ○ 송아지생산안정제 도입	
	糧穀管理法 개정	○ 양곡 수출입추천제 도입 ○ 양곡수입이익금의 양특회계 또는 농안기금 납입의 무화	
'95. 2.15	제3차 農政改革推進會議 개최	○ '94 농정개혁추진실적과 '95경쟁력강화 및 수산제도 개혁 방안 보고	
'95. 3	농림수산政策資金貸出制度개선	○ 신용대출확대 - 보증신용대출한도 : 1천만원→2천만원 - 무보증신용대출한도 : 5백만원→1천만원 ○ 보증한도 상향조정 - 농어업인 개인 : 1억원→2억원 - 법인·단체 : 2억원→5억원	○ 2004년 농신보기금 1조원 조성목표 ○ 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설치근거 마련('94. 12월 농·축협법 개정) ○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 규정 전면보완·시행('95. 3. 1)

일 자	정 책 명	주 요 골 자	비 고
'95. 3. 7 ~3.10	일본 식·음료국제 박람회 참가 (동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서류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인 축소 : 2~3인→1인 - 주민등록등본 생략 ○ 후취담보대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손보전제도 실시, 담보 물별 후취담보대출비율 책정 ○ 현지수입 및 유통업체초 청 간담회 ○ 특별 시음·시식행사 개최 ○ TV등 매스컴 초청설명회 협의회, 인터뷰등을 통한 특별 홍보활동등 	○ 118개업체 참여 46,149천불 계약 (김치·인삼·식혜등)
'95. 4. 1	農漁民 年金制施 行담화문 발표	○ 가입대상, 신고기한 등에 대한 안내문 농어업인 연 금관련 3부(내무·농림수 산·보건복지부)장관이 발 표	
'95. 4.20	農林水産部門豫算 市·道別 説明會 개최	○ 농림수산부문예산 편성 사 상처음으로 시·도별 예산 설명회 개최 - 각 시·도별 농정국장이 시·도 농정방향과 중점예 산 사업설명	○ 최초의 상향식 예산편성 방식으로 세일즈 농정의 일환이기도 함.
'95. 6. 7	農水産係 教育改 編과 活性化 方案 策定	○ 농림수산계 대학 - 특성화 대학을 선정하여 지역농림업 발전의 중심 체도 육성 - 과학기술개발 및 연구를 위한 시설·장비지원	

일 자	정 책 명	주 요 골 자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학교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고 유능한 인력을 정부가 직접모집 교육하여 농림어업에 종사할 중견전문 경영인 육성 - 농진청·수산청·산림청 산하에 각 전문학교 신설 ○ 農·水高 育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자 양성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집중육성 (농고 9개교, 수고3개교) - 자동화 축사등 시설·장비 지원 	
'95. 6.12	政策討論會 개최	○ 「농어촌발전대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95. 6.17	農漁村學生 特例入學制 실시에 따른 관계법령개정	○ 특별전형은 대학 학생정원령에 의한 입학정원의외로 하되, 총학생수는 당해학년의 입학정원의 2% 학과별로는 학과정원의 10%이내로 함.	○ '96년도 특별전형 대학현황 - 학교수 : 256개교 - 학생수 : 9,290명
'95. 6.23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施行令公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기준중 시·군 거주요건 삭제 - 당해 조합법인에 생산자재·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나 조합법인이 생산한 농림수산물의 대량구입자 포함 -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를 합명·합자 유한·주식회사로 함 	

일 자	정 책 명	주 요 골 자	비 고
'95. 6.23	農漁村整備法 施行令制定 公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업 회사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당해 법인 총 출자액의 1/2로 함 ○ 농어촌정비법이 제정(94. 12. 22)공포됨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계농지의 기준 및 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조건 규정 -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의한 간척지 매립지 등 분배대상시 규정 - 농진공 관리위탁시설 범위 규정 - 창설환지 용도의 시설 규정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의 사용경비 징수범위 등을 제정함 	○ 입법예고 : 95. 5. 10
'95. 7. 1	農水産物 蒐集商 登録制 施行	○ 등록수집상에 한하여 도매시장, 공판장에 출하가능	
'95. 7. 6	「農林水産事業評價 實施要領」 制定	○ 농림수산업 추진에 대한 평가요령을 정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지원조정등 사업효율성제고를 위한 경쟁원리도입	○ 훈령 제825호 ○ 30개사업 대상

일 자	정 책 명	주 요 골 자	비 고
'95. 8. 5	食物防疫法 改正 法律(案) 立法豫 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대상 병해충」, 「병충해 위험」 개념 도입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역 기반 마련 및 국제기준과 일치 ○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환경 보호 ○ 수출국 현지검사 실시근거 마련 ○ 시·도내의 병해충 방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95. 8.14	農林水産技術開發 事業 實施要領 制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기술 관리기관의 업무지정 및 운영 ○ 현장애로 및 첨단기술 개발사업의 과제신청, 선정, 협약방법 규정 ○ 농림수산기술개발 결과의 평가 활용방안 등 	
'95. 8.30	改正 農·水·畜·林 協法 討論會 開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발표 : 경북대 류진춘 교수 - 토 론 자 : 농림수산부, 학계, 언론계, 농·수·축·임협관계자 등 8명 ○ 내용 : 개정 농·수·축·임협법 및 정관에 관한 총괄적인 평가와 보완과제에 대한 점검을 통해 협동조합제도의 발전에 기여 	

일 자	정 책 명	주 요 골 자	비 고
'95. 8.31	協同組合發展企劃 團 發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농·수·축·임협중앙회의 경영평가 및 검증을 통하여 독립사업부제의 유지·보완 또는 신용사업의 분리·통합 및 별도법인의 설립 등 신용·경제사업의 전문화·효율화방안 검토 ○ 설치기간 : '95. 6. 23 ~ '97. 6. 30 (2년간) ○ 조직 : 정원 14명(농림수산부, 수산청, 산림청, 재경원, 농·수·축·임협관계자) 	
'95. 9.20	農水産物 原産地 表示業務 處理要 領 告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품목 확대(93→227개 품목) ○ 표시방법 및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순회교육 : 10. 6~10.24 1,200명 대상
'95. 9.27	農林水産 技術管 理센터 設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경제연구원 부속기구로 설치 - 국내외 기술동향분석 기술수요조사 및 예측 - 연구과제의 발굴, 선정, 평가 및 사후관리 	○ 인원 : 20명
'95.10.18	「災害救護 復舊費 用 負擔 基準」改 正 및 颱風, 豪雨 被害 復舊計劃 確 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ha미만 50%이상 농가대상 → 30%로 하행조정, 지원폭확대 ○ 가축피해시 입식비는 치가축기준에서 중돈·중닭으로 상향지원 	
'95.10.10	農漁村地域 範圍 指定 告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지역중 읍·면 지역 ○ 동의경우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 	
'95.10.20 ~10.29	光復 50週年기념 우리농수산물식품대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치담그기대회, 장류전시회 각종 품평회 및 시상 ○ 제기차기등 민속놀이 ○ 각도별 풍물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관인원 : 254만명 • 판매 : 200억원 • 업체 및 품목 : 433개업체 1,200개 품목 • 예산 : 9억원

世界貿易機構協定の 이행에 대응한
'95년도 農林水産業 構造調整事業 시행내용 보고서

1995年 11月 日 印刷
1995年 11月 日 發行

發行：大韓民國 政府
編輯：農林水産部 農政企劃審議官室
印刷：東洋文化印刷株式會社

〈非賣品〉